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

감사시간·감사보수·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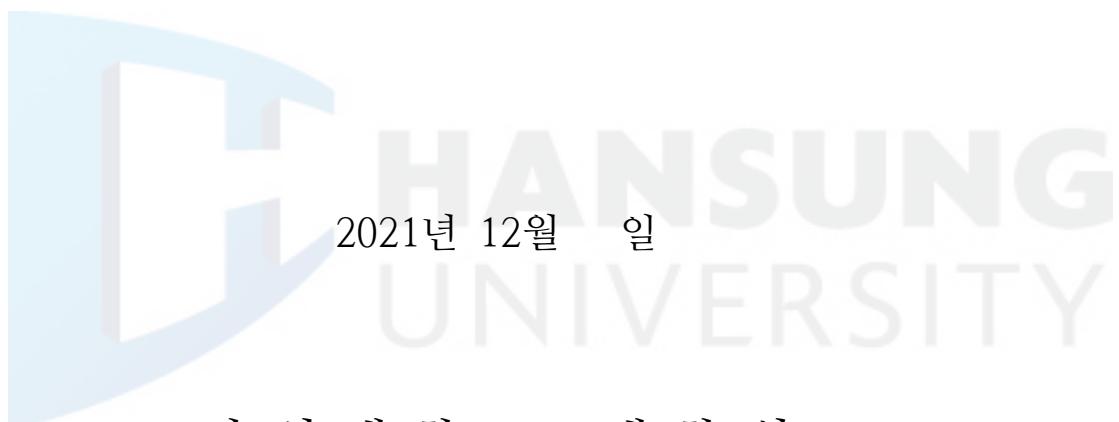
경영학과
회계학전공
소창수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용식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

감사시간·감사보수·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on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경 영 학 과

회 계 학 전 공

소 창 수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용식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

감사시간·감사보수·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on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위 논문을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경 영 학 과

회 계 학 전 공

소 창 수

소창수의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정 균 범 (인)

심사위원 김 용 식 (인)

심사위원 홍 용 식 (인)

심사위원 모 경 원 (인)

심사위원 채 수 준 (인)

국 문 초 록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
감사시간·감사보수·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를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경 영 학 과
회 계 학 전 공
소 창 수

2017년말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어 2020년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대상 기업에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2020년 사업연도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시간, 감사보수,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잠정이익과 실제이익의 차이)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에 대한 지정 전후의 분석결과,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지정 이후(2020년)가 지정 이전(2019년)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로써 주기적 지정으로 교체된 감사인은 감사결과에 대한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감사시간을 많이 투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감사보수도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후가 지정 이전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로서 감사인 교체 직전 자유수임감사인이 마지막 연도(2019년)의 감사를 보수적으로 실시하

여 의견불일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반사효과로 확인되었다. 이런 현상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으로 자유수임감사인이 교체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자신의 명성 훼손을 방지하고자 보수적인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은 교체 직전 선제적으로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2020년 기준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 간 전년대비 증가 정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이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주기적 지정 감사인이 감사결과에 대한 차별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감사투입 시간을 확대할 유인이 자유수임감사보다 더 크고, 감사기간은 3년간 보장됨에 따라 감사보수를 할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에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 간에 차이가 없었다.

본 논문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에 따른 주요 감사활동의 변화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은 회계상 문제가 없는 정상 기업임에도 감사인 지정 교체로 인해 감사비용이 크게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둘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은 교체 직전 선제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 확대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셋째, 감독당국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명단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반면 해당 기업(IR담당자)은 긍정적이므로 이해관계자들간 정보 비대칭 해소 차원에서 감사인 수임형태도 공시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처음 적용된 대상을 기준으로 분석함에 따라 표본이 제한적이라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므로 향후 표본과 기간을 보다 확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 감사시간, 감사보수,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감사인의 독립성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
제 3 절 논문 구성	3
제 2 장 제도(이론)적 고찰	5
제 1 절 외부감사법	5
1) 개요	5
2) 외부감사대상	7
제 2 절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9
제 3 절 감사품질	11
1) 감사품질의 정의	11
2) 투입기반 측정변수	13
3) 산출기반 측정변수	17
제 3 장 선행연구의 개관	19
제 1 절 감사인 지정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변화	19
제 2 절 감사인 지정과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의 변화	24
제 3 절 주요 감사활동 변화 요소들과 감사품질과의 관계	26
1) 감사시간과 감사품질	26
2) 감사보수와 감사품질	31
3)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와 감사품질	35
제 4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7

제 4 장 연구 설계	38
제 1 절 연구가설 설정	38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시간의 변화	38
2)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보수의 변화	39
3)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른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의 변화	41
제 2 절 연구모형 설정	43
제 3 절 연구표본 선정	49
 제 5 장 실증분석	51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51
제 2 절 단변량 분석	57
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60
제 4 절 가설 검증 결과	65
제 5 절 가설 검증의 요약	79
제 6 절 추가분석	82
1) 시간당감사보수를 이용한 비교	82
2) 직권 지정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 간 비교	85
 제 6 장 결 론	89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89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91
 참 고 문 헌	93
ABSTRACT	100

표 목 차

[표 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6
[표 2-2] 감사인 지정 자유별 현황	11
[표 2-3] 상장기업(비금융업) 평균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추이	17
[표 2-4] 상장기업(유가증권,코스닥) 1개사 평균 감사보수 추이	17
[표 3-1]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관한 연구	22
[표 3-2]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에 관한 연구	25
[표 3-3]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29
[표 3-4] 표준감사시간과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30
[표 3-5] 감사보수와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33
[표 3-6]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와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36
[표 4-1] 연구표본의 구성	50
[표 5-1] 기술통계	54
[표 5-2] 단변량 분석	58
[표 5-3] 상관관계	62
[표 5-4] 가설 1-1의 검증 결과	66
[표 5-5] 가설 1-2의 검증 결과	68
[표 5-6] 가설 2-1의 검증 결과	70
[표 5-7] 가설 2-2의 검증 결과	72
[표 5-8] 가설 3-1의 검증 결과	75
[표 5-9]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기간별 의견불일치 차이	76
[표 5-10] 가설 3-2의 검증 결과	78
[표 5-11] 가설검증 결과 요약	81
[표 5-12] 추가분석(시간당감사보수-주기적 지정 전후)	83
[표 5-13] 추가분석(시간당감사보수-주기적 지정과 자유수임)	84
[표 5-14] 추가분석(감사시간-직권 지정과 자유수임)	86
[표 5-15] 추가분석(감사보수-직권 지정과 자유수임)	87
[표 5-16] 추가분석(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직권 지정과 자유수임)	8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감사인 선임이 1982년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의거 강제배정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기업이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수임제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감사인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감사인의 독립성 저하 및 회계투명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이 나타나고 감사의견 구매(opinion shopping) 현상이 초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이후부터 이를 보완하고자 예외적인 경우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래서 1989년 12월 외부감사법을 개정하고 1990년부터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여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감리제재조치, 관리종목, 비적정감사의견, 부채비율 초과 등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나 상장예정법인 등에 대해 적용(직권 지정제)하였다.

2015년에는 지정 감사 후 첫 자유수임 시 기존 지정감사인과 자유수임감사 계약을 금지하는 신지정감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아울러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계분식 사건이 발생하자 2017년에는 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표준감사시간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고 내부회계관리도 외부감사에 포함하는 등 신외부감사법의 시행으로 각종 회계처리절차 및 감사활동 등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주권상장법인이나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6년간 자유수임감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 이후 3년간은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0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0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처음 적용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동 제도 시행 전후 감사시간, 감사보수,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¹⁾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실효성을 검증하고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에 따른 감사품질의 투입기반 측정요소(감사시간, 감사보수)와 산출기반 측정요소(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의 변화에 대해 지정 전후 및 수임형태가 다른 자유수임감사 기업과의 차이까지 비교 분석함으로써 선 행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 감독당국,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에게 정책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공헌하는 바도 있다.

제 2 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감사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3가지 측정요소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자유수임감사에서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 교체된 기업의 경우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노력의 일환인 감사시간이 증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유수임감사는 감사시장이 경쟁적인 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의 경우에는 중선위에서 직접 지정하기 때문에 지정된 외부감사인이 감사보수를 할인해 줄 유인이 없어 감사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의 경우 자유수임감사와는 달리 경영자와의 유착관계도 없어 감사인 독립성이 크게 강화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감사의견 표명 성향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에 대하여 지정 전후 (2019년과 2020년)의 감사시간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감사 기업 간 전년대비 감사시간 증가 정도의 차이를

1) 경영자가 공시한 잠정이익(경영자 의견)과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후 나타난 실제이익(감사인 의견)을 기초 총자산으로 나눈 절댓값을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의 측정지로 활용

분석한다. 둘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에 대하여 지정 전후(2019년과 2020년)의 감사보수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감사 기업 간 전년대비 감사보수의 증가 정도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에 대하여 지정 전후(2019년과 2020년)의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변화에 대해 잠정이익과 실제이익 간의 차이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또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감사 기업에 대하여 전년대비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증가 정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시간, 감사보수,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를 측정 대용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김용식(2013)의 ‘K-IFRS 시행에 따른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와 감사 의견에 관한 연구’, 김윤진·김용식·홍용식(2014)의 ‘K-IFRS 자발적 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김재춘·김용식(2018)의 ‘국내 비상장기업의 감사인 교체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모형을 변형해 측정하였다. 아울러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에 대한 지정 전후 비교는 2019년과 2020년 데이터를 사용하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감사 기업 간 비교는 2020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변화값을 산출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제 3 절 논문 구성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내용과 방법 등 서론을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외부감사법,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감사품질 등에 대한 제도(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제3장은 본 연구와 관련된 감사인 지정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변화,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변화, 주요 감사활동 변화 요소들과 감사품질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연구가설별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표본의 선정과정을 설명하며 제5장에서는 연구가설별로 종속변수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전후의 변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기업 간 변

화의 차이에 대해서 실증분석한다. 아울러 추가분석에서는 시간당감사보수, 주기적 감사인 지정과 유사한 직권 지정의 경우 자유수임감사 기업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과 시사점,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 등을 기술한다.



제 2 장 제도(이론)적 고찰

제 1 절 외부감사법

1) 개요

외부감사란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감사인이 기업 내부 회계 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잘 이행되었는지 감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 주주, 종업원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감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 외부감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선임된 외부감사인이 의무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기업 내 감사 또는 기타 내부조직에 의한 감사는 외부감사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외부감사법은 1981년 처음 도입된 이후 수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왔으며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를 겪은 이후 2017년 9월 28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신외부감사법이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신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책임 등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결국 투자자를 보호하고 회계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개정된 신외부감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 측면에서는 회계 처리에 대한 책임 및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감사인 측면에서는 피감사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높이며 정부 측면에서는 회계부정이나 감사부실에 대한 감독역량 및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감사인 측면에서 강화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한 강화, 상장회사 감사인등록제 도입,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책임 강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감사인 선임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크게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기업〉 회계처리 책임 및 자체역량 강화	○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회사의 책임 강화 -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요구 금지 - 법정기간(주총 6주 전) 내 감사인/증선위 앞 재무제표 미제출시 사유공시 의무신설	2019.11.1 시행
	○ 회사의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실시 -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 실태에 대한 직접 주주총회 보고 의무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시행
	○ 감사인 선임 권한을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 -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시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 선임 조사 후 경영진 앞 시정요구	
	○ 대형 비상장사 및 금융회사의 회계규율을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	
〈감사인〉 독립성 및 감사품질 제고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19.11.1 이후 시작된 사업연도
	○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한 강화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책임 강화	
	○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2019년도부터 도입
	○ 감사인 선임기간 단축	4개월 이내 → 45일 이내
〈정부〉 회계부정 감사부실 관련 감독역량 및 제재수준 강화	○ 외부감사법 상 과징금제도 신설 - 회사 : 분식액 20% 이내 - 회사 관계자 : 회사 과징금 10% 이내 - 감사인 : 감사보수 5배 이내	2018년도 결산서류 부터 적용
	○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담당임원 제재근거 마련	
	○ 회계부정 관련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 회계법인에 대한 상시감독 강화	
	○ 회계부정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주)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9.28),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금융위 소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4.9) 인용

2) 외부감사대상

외부감사대상은 외부감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대상 중에서 외부감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감사법 제10조에 의한 선임기한(감사위원회 의무설치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기타의 경우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내에 증선위에서 절차에 따라 지정한 후 통보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2021.1.27)한 2020년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31,744사(비상장법인 29,362, 주권상장법인 2,382<코스닥 1,447, 유가증권 792, 코넥스 143>)이며, 이 중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2,382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6사이다. 한편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현황을 보면 계속선임 1,234사(51.8%), 변경선임 1,123사(47.1%), 신규선임 25사(1.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부감사법상 명시된 감사대상 요건과 감사인 지정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외부감사대상 요건(외부감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의 사항 중 2개(유한회사는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유한회사의 경우)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외부감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직권 지정〉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200% 초과 및 업종평균 대비 1.5배 초과한 회사
- 감사인 선임기간 내 감사인 미선임
- 감사인 선임기간 내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임직원의 일정금액 이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로 고소·공소가 제기된 회사
-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
- 과거 3년간 최대주주 변경이 2회 이상 또는 대표이사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 3년 연속 영업손실 또는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 투자주의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감사보수 미지급·미증액, 감사자료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관련 부당압력 등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 외부감사법상 특정 사항을 위반하여 증선위로부터 경고보다 높은 조치를 받은 회사
-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에서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감사인 등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인정된 회사
-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자문을 요구하거나 받는 회사 등

〈주기적 지정〉

- 연속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

제 2 절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기업의 재무활동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제3자인 회계법인이 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피감사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자유수임제를 도입·시행하였다.

그런데 자유수임제는 피감사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이 계속 감사인을 유지하거나 감사보수의 영향에 따른 유착관계 형성 등으로 인해 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 활동에 대한 독립성이 저하되거나 부실감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공신력을 높이고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자 1989년 12월 외부감사법을 개정하고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였거나 회계 처리기준 상 위반사항이 발생 되는 등 감사인을 별도 지정해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가 1990년부터 도입되었다.

또한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제는 1994년부터 도입되었는데 2001년부터는 공개예정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증선위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하다가 2004년 4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되고 2006년부터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장예정기업도 증선위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직권 지정제)으로 바뀌었다.

이어 2015년에는 지정 감사 이후 자유수임 시에는 기존 지정 감사인과의 자유수임계약을 금지하는 등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보다 더 강화하였다.

한편 2017년 9월 28일 외부감사법을 전부 개정하여 기존의 직권 지정제와 별도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었는데 지정 대상은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서 6년간 자유수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3년간에 대해서 증선위에서 별도로 지정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9년 1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외부감사인 지정 종류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와 주로 회계상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지정하는 직권 지정제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특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은 금융위원회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외부감사인 지정제는 피감사기업이 경영자에게 유리하게 감사인을 통제하려는 유인을 줄여서 감사인이 독립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선임권을 제한하고자 정부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결국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 목적은 자유수임제 하에서 나타나는 감사인의 독립성 저하 우려를 차단하고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자유시장 경쟁 논리에 역행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감사인 독립성 제고 측면에서는 순기능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정 감사인의 감사 기간은 3개 사업연도로 제한하는 반면 동 기간에는 지정 감사인이 감사 수임을 위해 타 감사인과 경쟁할 필요없이 감사인이 제시하는 금액에 대해 양자 간 협상에 의해 정함에 따라 감사보수를 낮게 책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지정 감사인의 감사보수는 자유수임감사보다 평균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있다. 그렇지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포함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가 정책적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정착되어 간다면 자유수임감사 이후 지정된 외부감사인의 경우에는 피감사기업의 경영자와 유착관계가 없으므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다 더 확보된 가운데 감사인 자신의 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감사품질은 예전보다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1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이 지정된 기업은 1,521개로서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31,744개)의 4.8%에 해당된다. 지정 사유별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은 462개이고 나머지 1,059개는 직권 지정 기업이다. 특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최초 적용된 2020년 사업연도는 선별적으로 220사가 지정(금융감독원 2019.10.16일 보도자료, 2020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 실시)되었으며 2021년 사업연도(462개사)는 전년 보다 242개사가 추가 지정(금융감독원 2021.1.27일 보도자료, 2020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현황)된 것이다.

[표 2-2] 감사인 지정 사유별 현황

(단위 : 사, %)

		2020 사업연도	2021 사업연도	증감	증감률
직 권 지 정	주기적 지정	220	462	242	110.0
	상장예정법인	331	362	31	9.4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197	245	48	24.4
	관리종목	112	133	21	18.8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55	75	20	36.4
	부채비율 과다	108	64	△44	△40.7
	감리조치	64	55	△9	△14.1
	회사요청	14	35	21	150.0
	선임절차 위반	26	30	4	15.4
	감사인 미선임	66	22	△44	△66.7
	횡령/배임 발생	8	14	6	75.0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10	8	△2	△20.0
	기타	13	16	3	23.1
	소계	1,004	1,059	55	5.5
합 계		1,224	1,521	297	24.3

주 1)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로 분류

2)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1.27)

제 3 절 감사품질

1) 감사품질의 정의

감사품질에 대한 전통적 정의는 대부분 DeAngelo(1981)가 감사서비스의 품질로 정의한 대로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의 회계시스템에서 잘못된 위반사항을 발견할 확률과 발견된 위반사항을 보고할 확률을 더한 결합확률이다. 한편 잘못된 위반사항을 발견할 확률은 감사인의 기술 역량이나 감사절차, 샘플링 범위 등의 요소에 달려있고 위반사항 보고확률은 감사인이 피감사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 정도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였다.

Carcello et al.(2002)는 높은 감사품질에 대해 ‘보다 많은 감사작업을 요구하는 고도의 보증’이라고 정의하면서 감사에 투입하는 요소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Defond and Zhang(2014)은 DeAngelo(1981)가 정의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회계 정보에 대한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의 경제적 실상까지도 재무제표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라며 종전보다 확대된 범위까지 감사품질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영한·정영기·김광윤(2019)이 감사업무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감사인, 재무정보이용자, 학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감사품질의 정의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정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감사 품질의 중요한 요소로는 발견된 왜곡표시사항 또는 감사의견을 소신대로 표명하는 정도’로 나타나 감사의 독립성을 감사품질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감사품질은 직접 관찰할 수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통상 감사인 규모 및 명성, 감사의견 표명성향, 소송비율, 감리지적, 감사 시간 및 감사보수, 비감사서비스 제공 여부 등 다양한 대용치를 활용하여 측정하여 왔다(DeAngelo, 1981; Francis and Wilson, 1988; DeFond, 1992; DeFond and Zang, 2014; 이효익, 1990; 박종일과 최관, 2009; 오윤숙 등, 2013).

권수영·이한상·최종학(2013)은 감사투입요소 관련 대용치로 계속감사 기간, 회계사 경력이나 이사선임 후 경력, 산업별 전문성, 감사시간, 감사보수를 들고 있으며, 감사결과물 관련 대용치로는 감사의견, 재량적 발생액, 이익반응계수 등을 들고 있다.

DeFond and Zhang(2014)은 감사품질 대용치를 투입기반 측정치로는 Big4 회계법인, 산업전문감사인, 감사보수 등의 순으로 제시하는 한편 산출기반 측정치는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감사의견, 재량적 발생액, 보수주의, 이익반응계수 등의 순으로 제시하며 특정 측정치보다는 가능한 성격이 다른 복수 측정치를 사용하면 보다 완전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권고

하고 있다.

아울러 류승우·이종천·김웅길·한승수(2015)와 이영한·신나리(2018)는 감사계약 특성과 관련한 투입기반 대용치로서 대표적인 감사품질 측정변수로는 감사시간, 감사시간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이동훈·박선영·하석태(2019)는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이 더 보수적인 감사를 수행하는지를 분석하고자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 변화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감사품질 측정변수가 다양한 가운데 성격이 다른 복수의 측정치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활동의 변화로서 감사품질의 투입기반 측정치인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산출기반 측정치인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를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투입기반 측정변수

가) 감사시간

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해 투입하는 감사 노력의 계량적 수치로서 감사시간 투입량과 감사품질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감사시간이더라도 총 투입감사시간에서 분반기 검토시간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상위직급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Deis and Giroux(1992)는 미국 텍사스교육청 감사부서의 5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감사시간 증가에 따른 품질관리검토(QCR) 결과에 기록된 문자수를 분석한 결과 감사품질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DeFond et al.(2014)는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많아지면 감사품질이 더 향상되고 감사보수가 크면 투입되는 감사인력이 더 많아질 수 있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감사품질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제시하고 있다.

박종일·최관(2009)은 비정상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정상보다 많은 감사시간이 투입된 경우 재량적 발생액 감소로 감사품질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권수영·기은선·허진숙(2012)은 비정상 감사시간이 많이 투입될수록 감사 초기 연도의 이익의 질은 낮아지는 것이 완화됨을 확인함으로써 감사품질이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노준화·신유진(2018)은 감사투입시간이 정상보다 많을수록 기업의 경영자가 공시한 잠정이익보다 실제 당기순이익이 하향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병욱(2018)은 감사시간이 사후 세무조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시간의 증가는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후 세무조사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세무 품질의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28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인 신외부감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표준감사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외부감사법을 적용받는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표준감사시간제²⁾ 적용 대상이다. 다만 표준감사시간 적용 그룹은 개별자산의 규모 또는 상장 여부 등을 감안하여 11개로 나누고 각 그룹 별 시행 시기와 적용률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점차 확대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표준감사시간제는 감사시간을 직전 사업연도 대비 최고 상한으로는 150%, 최저 하한으로는 100%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감사시간이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로 인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유선·노기팔·박경호(2021)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핵심직급의 감사시간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1~2015년 사업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주권상장기업 중 비금융업을 제외한 평균 감사시간은 2011년 1,355시간이었으며 2015년은 1,497시간으로 10.5% 증가하였으며 최근 표준감사시간제를 적용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는 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 외부감사법 제16조의2에는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으로 정의되어 있다.

나) 감사보수

감사보수는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으로부터 받는 감사서비스 대가로서 감사시장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고 감사품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감사보수는 주로 감사투입원가(감사시간 및 감사인력 수준), 감사위험, 품질 프리미엄, 감사인의 규모와 명성 등이 반영되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감사보수 환경을 살펴보면 1999년 2월 5일까지는 감사보수가 정부에서 정한 감사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이후에는 동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인과 피감사기업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유경쟁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기업이 감사인의 감사보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2001년 3월에는 외부감사법을 재개정하여 감사인의 보수와 감사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인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현재와 같은 자유경쟁 감사시장에서의 문제점은 과당경쟁으로 감사보수는 낮아지고 건별 감사보수가 낮아지면 전체수임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하여 감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런 경우 감사인은 위험이 감지되는 기업을 제외하고 철저하게 감사할 유인도 낮아진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많은 기업을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적은 표본만 추출하여 빠르게 감사하고 다른 고객인 피감사기업으로 이동하게 되어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감사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해야 하고 감사투입시간 증가는 적정한 감사보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한편 감사보수와 감사 수익성(시간당감사보수)이 높더라도 감사인과 피감사기업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감사인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효과와 감사품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 전 감사보수는 자유수임 계약으로 결정되므로 감사투입시간과의 비연동, 가격덤핑 등의 영향으로 감사보수가 낮아져 감사품질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상존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감사인 지정 시에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인이 독점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감사수임을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으며 감사기간도 3년이 확보되므로 감사보수를 낮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

이로 인해 감사보수는 자유수임감사보다 평균적으로 높을 것이다. 특히 회계적 문제 기업 등에 대한 직권 지정의 경우 높은 감사위험 요소 등을 감안하기 때문에 감사보수는 더 높게 설정된다고 볼 수 있다.

감사보수가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는 감사시장에서는 우수한 감사품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이 상대적으로 타 감사인에 비해 높은 감사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Francis, 1984; Francis and Simon, 1987; 권수영·김문철·정태진, 2005; 박종일·최관, 2009; 등).

반면 감사인과 피감사기업과의 유착관계나 경제적 의존도 여부에 따라 감사보수와 감사품질 간에는 반비례한다는 주장(김명인·최종학·서정민, 2008)도 제기되고 있지만, 유의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박재환·박상연, 2011).

또한 이광숙·기은선(2018)은 감사보수가 할인된 피감사기업의 감사품질이 오히려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고 오광욱·문보영(2017)은 설문조사를 이용해 정상 수준을 초과한 비정상 감사보수를 지급한 피감사기업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최준혁·김새로나(2019)는 2014~2016년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사수익성을 나타내는 시간당감사보수는 감사품질을 나타내는 이익조정과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보수 할인이 일반화된 경쟁적 감사시장 하에서는 감사수익성 확보가 감사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초도감사³⁾ 보수의 경우 할인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항에 대해 이론적으로 규명한 연구(DeAngelo, 1981)와 함께 실증분석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다수 있는(Simon and Francis, 1988; Walker and Casterella, 2000; Desir et al., 2014; 이상철·박재완·정갑수, 2010) 반면에 이를 부정한 연구도 있다(Dye, 1991; Craswell and Francis 1999; 노준화·배진수·전영순, 2003).

이처럼 감사보수와 감사품질 간의 관계는 상반된 방향의 이론이 혼재한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의 과거 보도자료를 종합한 [표 2-3]에서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상장기업(비금융업)의 감사보수는 12.8% 증가하였다. 한편 한

3)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어 피감사기업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는 첫해 연도의 감사를 말한다.

국경제신문에서 발표(2021.8.24)한 내용인 [표 2-4]에서 보면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상장기업 1개사 평균 감사보수는 5년간은 2.2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감사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2017년 이후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 감사환경이 크게 변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2-3] 상장기업(비금융업) 평균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추이

(단위: 개, 시간,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년간 증가율(%)
회사수	1,475	1,516	1,568	1,645	1,713	-
감사시간	1,355	1,365	1,448	1,479	1,497	10.5
감사보수	99.8	104.3	108.8	109.2	112.6	12.8
시간당(천원)	73.6	76.4	75.1	73.8	75.2	-

주)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1~2015년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표 2-4] 상장기업(유가증권,코스닥) 1개사 평균 감사보수 추이

(단위: 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간 증가율
감사보수	125	141	183	228	283	2.26배

주) 자료 출처 : 2021.8.4자 한국경제신문(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제공)

3) 산출기반 측정변수

가)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감사기간 중 경영자가 공시한 내용과 감사보고서 상 실제 나타난 회계정보의 차이로 인해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경영자는 시장에서 기업가치 상승 유인을 통한 단기적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회계기간 중 투자자의 관심 수준이 높은 정보 수요 중의 하나인 이익예측에 대한 잠정공시를 보다 낙관적으로 발표하도록 의사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결산시점에는 재무제표 작성 시 이를 충족시키고자 이익조정까지 실행 할 수 있다. 반면 감사인은 회계 활동 및 재무제표에 기록된 내용을 보다 객관 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으로 감사를 수행하게 되고 동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이익을 산출한다. 이로써 경영자가 회계기간 중 공시한 잠정이익과 감사인의 감사결과로 나타난 실제이익 간의 차이 정도가 대표적인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감사품질의 측정요소로도 충분하다.

DeFond and Jiambalvo(1994)는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 조정하고자 공격적인 회계처리를 선택한 경우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가 자주 발생 하며 경영자가 감사인을 교체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황국재·박진모·김기범(2012)는 경영자의 공격적인 회계처리로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발생 시 감사보고 시차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는 확정이익의 공시지연 유발로 이어져 투자자들의 사적 정보에 대한 욕구를 높이게 됨에 따라 추가비용까지 발생하는 등 자본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 하는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조은정·정주렴·김범준(2016)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영자의 능력이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영자의 능력은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금액과 빈도에서 통계적으로 반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로써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감사인과의 의견불일치 및 재무제표 작성 능력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와 감사품질과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자유수임감사 기업보다는 피감사기업과 상대적으로 유착관계가 없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경우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는 보다 크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제 3 장 선행연구의 개관

감사인 지정제는 외부감사인을 피감사기업이 아닌 증선위에서 강제 지정하는 제도로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품질을 높임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되는 재무회계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감사인 지정제는 1990년부터 회계적 문제가 있거나 상장예정법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직권 지정제)되었으며 최근에는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여 2020 사업연도부터는 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직권 지정제에 의한 지정 감사인의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재량적 발생액의 변화를 중심으로 감사품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경우에는 피감사기업이 상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과 이로 인한 감사보수 증가가 수반되는 한편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됨에 따라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가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정 감사제와 관련하여 감사인 측면의 노력인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변화, 그리고 독립성 차원에서 감사인의 의견표명 성향인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이를 요소들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효과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 절 감사인 지정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변화

증선위에서 감사인으로 지정된 감사는 자유수임감사보다 감사인 교체에 따른 감사결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더 많은 감사인의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초도감사의 경우에는 그 경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지정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자유수임감사와 달리 감사위험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감사보수를 높게 책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공인회계감사회(이하 “한공회”)에서 표준감사시간이 제공되는 가운데 최근 신외부감사법상으로도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을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감사시간 증가와 더불어 이로 인해 감사보수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DeAngelo(1981)는 이론적 모형을 통해 초도감사에서 감사보수가 할인될 수 있는 조건으로 감사시장이 경쟁적이어야 하며 계속감사를 통해서 미래의 경제적 이득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노준화·배길수·전영순(2003)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지정기업 데이터와 한공회에서 제공한 감사보수를 가지고 지정 감사인이 자유수임감사보다 더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정감사의 감사보수가 자유수임감사보다 평균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초도감사인 경우는 다른 연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지정 감사의 감사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 반면 3년 동안은 감사인이 교체되지 않는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초도감사의 경우 자유수임감사의 감사보수는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할인이 존재한 반면 지정 감사의 감사보수는 할증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황인태·강선민(2005)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감사인이 자유수임에서 지정으로 변경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기간과 비지정기간 간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감사인 지정기간의 감사보수는 비지정기간보다 높아지고 감사시간도 더 많이 투입되었으나 감리지적 자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시간의 유의한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혁·지현미(2006)는 소송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피감사기업 감사인의 경우 감사투입시간이 보다 많아지고 이로 인해 감사인의 보수적인 회계처리 경향이 강화되어 감사품질은 향상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배지현·김상일·이호영(2009)은 2006년부터 변경 시행된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이 교체된 경우와 동일인이 계속 지정된 경우를 비교한 추가분석 결과에서도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신용준·김은(2010)은 자유수임감사와 지정 감사의 보수의 차이에 대해

지정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간 내생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통제한 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는 지정 감사인 보수가 자유수임감사인보다 평균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감사시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ig4⁴⁾와 non-Big4 감사인 간 감사보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감사보수 결정요인은 회계법인 규모보다는 감사투입시간이었다. 따라서 감사보수는 감사시간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이를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며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모두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윤진·김용식·홍용식(2014)은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 간의 감사보수 차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보다 감사보수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특히 도입 전보다는 도입 이후 감사보수가 더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김윤경·문상혁(2015)은 감사인 지정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감사보수당 감사시간으로 지정 전, 지정 기간, 지정해제 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지정 전과 지정 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지정해제 후에는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지정 전보다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하면서도 지정이 해제되면 감사보수는 감소한 반면 감사투입시간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감사보수당 감사투입시간은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김경률·윤용석(2019)은 자유수임감사가 지정 감사인으로 교체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유의하게 증가된 반면 재량적 발생액도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지정 감사인 교체로 인한 피감사기업의 이해비용이 존재한 것을 확인하였다.

선우희연·이우종(2020)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이행비용을 피감사기업의 효용변화(감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피감사기업의 부담비용은 전체 감사시장 및 개별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수준(계속감사기간 6년 전제)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한 효용감소분은 개별기업의 규모, 감사보수, 종전 감사인과의 계속감사기간이 길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을 말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종합적인 견해는 대부분 지정 감사인으로 교체된 경우 감사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감사보수도 증가하는데 이것은 감사인이 자유수임감사에서 지정 감사인으로 교체됨에 따라 지정 감사인은 단기간에 피감사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감사품질에 대한 차별성까지 부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관한 연구

연구자	주요 내용
DeAngelo (1981)	초도감사에서 감사보수가 할인될 수 있는 조건으로 감사시장이 경쟁적이어야 하며 계속감사를 통해서 미래의 경제적 이득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출
노준화·배길수 ·전영순(2003)	지정감사 감사보수는 자유수임감사 보수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지정감사인이 초도감사인 경우 다른 연도 또는 자유수임감사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고 초도감사의 경우 자유수임감사는 할인이 존재한 반면 지정감사는 할증인 존재한다고 주장
문상혁·지현미 (2006)	소송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피감사기업 감사인은 감사투입시간이 보다 증가하고, 감사인의 보수적인 회계처리 경향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는 감사품질은 향상된다는 점을 시사
황인태·강선민 (2006)	감사인 지정기간의 감사보수는 비지정기간보다 높아지고 감사시간도 더 많이 투입되었으나 감리지적 사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시간의 유의한 증가는 없었음을 확인함 (상장법인 – 보수 증가, 등록법인 – 보수 및 시간 증가)
배지현·김상일· 이호영(2009)	2006년부터 시행된 상장예정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제도가 이의조정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량적발생액이 감소하여 감사품질은 개선되고 감사보수도 증가한 것을 확인
신용준·김은 (2010)	자유수임감사와 지정감사의 감사보수 차이에 대해 보수와 감사시간 간 내생성을 통제 후 분석한 결과 지정감사의 감사보수가 자유수임감사보다 평균적으로 높고 이는 감사시간 증가에 따른 것임을 확인함

연구자	주요 내용
김윤진·김용식·홍용식(2014)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가 도입하지 않은 비상장기업에 비해 도입 전·후 모두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는 도입 이후가 도입 이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함
김윤경·문상혁(2015)	감사인 지정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감사보수당 감사시간으로 지정 전, 지정기간 중, 지정해제 후로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 지정 전과 지정기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나 지정해제 후에는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함 또한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하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감사보수는 감소한 반면 감사투입시간은 동일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도 시사
김경률·윤용석(2019)	자유수임감사가 지정감사인으로 교체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유의하게 증가되고 재량적 발생액도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지정감사인 교체로 인한 피감사기업의 이행비용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
선우희연·이우종(2020)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이행비용을 피감기업의 효용변화(감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피감사기업들의 부담비용은 전체 감사시장 및 개별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수준(계속감사기간 6년을 전제)이었으며, 효용감소분은 개별기업의 기업규모, 감사보수, 종전 감사인과의 계속감사기간이 길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재은·고성천(2020)	2017년 신외감법 시행 이후 상장법인 감사인의 금융위 등록하는 감사인등록제도와 감사품질 및 감사시간·보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등록감사인과 비등록감사인 간 재량발생액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고 감사시간 및 보수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
이유선·노기팔·박경호(2021)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감사투입시간을 수준변수와 변동률 변수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총 감사투입시간과 핵심지급(품질관리검토자, 담당이사, 등록회계사)의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한 것을 확인

제 2 절 감사인 지정과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의 변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정도는 피감사기업의 재무회계 활동과 관련한 경영자의 분식회계나 이익조정, 공시 등에 대한 오류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보고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따라서 감사인이 자유수임감사에서 지정한 감사인으로 교체될 경우 피감사기업과 유착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빈도와 크기는 이전보다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DeFond and Jiamalvo(1994)는 기업의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할 경우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가 자주 발생하고 이것이 감사인 교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손성규·이은철(2005)은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가 발생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차기 감사인 교체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김용식(2013)은 2011년부터 시행된 K-IFRS 도입 전후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K-IFRS 시행 이후에는 이전대비 크기와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과정에서 감사인으로서 전문가 의견이 경영자 의견과 다르더라도 적극 제시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명곤·인창열·최지환(2019)은 감시비용과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정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부감사보수인 외부감시비용이 높을수록 의견불일치 정도가 높아진 반면 사외이사나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보수인 내부감시비용은 높을수록 의견불일치 정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훈·박선영·하석태(2019)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포함하여 감사인의 법적책임이 크게 증가된 신외부감사법이 2018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이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업-연도 표본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2017년과 2018년 모두 2016년 대비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신외부감사법이 발표되자 시행 전부터 감사를 보수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표 3-2]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에 관한 연구

연구자	주요 내용
DeFond & Jiambalvo (1994)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 조정하고자 공격적인 회계처리를 선택할 경우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가 자주 발생하고 감사인 교체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
손성규·이은철 (2007)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가 발생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차기 감사인 교체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
김용식 (2013)	K-IFRS 시행 이후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견불일치는 유의적으로 증가한 반면 감사의견 변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감사인이 경영자의 이익 상향조정 의도를 억제시킨다는 점을 시사
이명곤·인창열·최지환(2019)	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회) 보수 등 내부감시비용이 높을수록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는 낮아진 반면 외부감사인 보수 등 외부감시비용이 높을수록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는 높아진 것을 확인
이동훈·박선영·하석태(2019)	2018년 11월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의 감사실패에 대한 제재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실패로 인한 제재와 소송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여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증가를 예상한 가운데 분석한 결과, 시행 전후(2018과 2017)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2016년과 2017년, 2018년을 각각 비교한 결과에서는 의견불일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신외부감사법 시행 발표에 따라 시행 전부터 감사를 보수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해석

제 3 절 주요 감사활동 변화 요소들과 감사품질과의 관계

감사품질을 측정하는 대용변수는 감사인 측면에서 노력인 Input 요소와 결과물인 Output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Input 요소 관점의 대용변수로는 감사인의 규모나 명성, 감사시간, 감사보수, 의견표명성향, 산업전문성, 소송비율 등이 사용되었고, Output 요소 관점의 대용변수는 주로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하여 활용하는 한편 실제이익조정, 순자산 주가배수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2018년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신외부감사법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으로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의 변화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감사시간과 감사품질

감사시간은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으로서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활동을 수행한 정량적 지표이기 때문에 감사인 측면의 Input 요소의 감사품질 측정치로 많이 사용된다.

DeFond et al.(2014)는 감사투입시간이 많아지면 감사품질이 더 향상되고 감사보수가 크면 감사투입인력이 더 많아질 수 있어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의 중요한 요소임으로 확인하였다.

손성규·이영한·신용인(2006)은 감사투입시간과 재량적발생액과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확인한 반면 직급별 감사투입시간 비중의 차이에 따른 재량적발생액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곽수근·박종일(2008)은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많은(적은) 기업일수록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에 대한 오차는 유의하게 더 높은(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정재욱·김진희·임태균(2009)은 감사시간과 재량적발생액 절대값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감사시간과 감사품질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마희영·박성종·허광복·이만우(2012)는 감사시간이 산업 평균보다 낮게 충분히 투입되지 않았거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확인되는 기업에서는 추후 회계 관련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비정상 감사시간이 작은 경우 감사품질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징후를 예견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류승우·이종천·김용길·한승수(2015)는 Big4에 속한 회계법인의 감사시간과 내부심리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할수록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은 양(+)과 음(−)의 방향 모두 억제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김용수·전규안(2016)은 총 감사투입시간이 많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여 감사품질이 향상되는데,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품질관리검토자나 등록 공인회계사 감사시간 투입이 많을 경우 보다 더 유의적임을 확인하였다.

권수영·김효은·정경철(2018)은 2014년부터 공시된 직급별 감사투입시간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감사 초기 감사품질이 낮은 경우에는 이후 계속감사 기간 중 비정상 감사시간이 높아지면 감사품질 저하현상은 완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윤용석(2020)은 연결감사시간을 별도로 공시한 기업의 연결감사 투입시간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여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표준감사시간제도⁵⁾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2017년 9월 28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동 제도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가 시작되었다.

박종성·조은주(2016)는 한공회의 표준감사투입시간이 제공된 이후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감소하여 감사품질이 향상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실제감사투입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한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품질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도 확인하였다.

신현결·정수진(2017)은 한공회가 제공한 평균 감사투입시간에 관한 자료가 감사인의 실제 감사투입시간과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

5)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2019년부터 도입된 주요 이슈 중 하나로서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요인으로 나타난 불충분한 감사시간 투입 문제에 대해 감사인의 정당한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산규모에 따라 그룹을 나눠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인의 실제 감사투입시간은 평균 감사시간에 근접하도록 조정되고 이로 인해 감사품질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성·곽승욱(2018)은 한공회가 평균 감사투입시간 제공을 종료할 때 감사시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감사시간 증가 정도가 평균 감사투입시간 제공 시 보다 유의하게 작아지고 특히 non-Big4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민우·정기위(2020)는 감사시간이 한공회에서 제공한 표준감사투입시간보다 낮았던 기업은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실제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감사인에게 지급된 비감사보수가 높은 그룹에서는 실제 감사시간을 표준감사시간보다 많이 투입하더라도 감사품질은 오히려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김경용·정균범(2020)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표준감사시간제 적용 전인 2018년과 적용 후인 2019년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감소하여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감사시간이 100% 미만 적용된 그룹에서 감사시간 증가에 따라 감사품질 향상 정도는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종전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적은 기업은 감사시간을 보다 더 많이 투입할 경우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감사시간의 증가 또는 비정상 감사시간으로 표준감사시간 수준까지 감사시간이 더 투입될 경우 감사품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3-3]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연구자	주요 내용
DeFond et al. (2014)	감사투입시간이 많아지면 감사품질이 더 향상되고 감사보수가 크면 감사투입인력이 더 많아질 수 있어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의 중요한 요소임으로 확인
손성규·이영한· 신용인(2006)	직급별 감사투입시간과 감사위험 및 재량적 발생액과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감사투입시간과 재량적 발생액과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직급별 감사시간 투입비중의 차이와 재량적 발생액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함
곽수근·박종일 (2008)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정상 수준보다 많은(적은) 기업일수록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에 대한 오차는 유의하게 높았으며(낮았음), 특히 비정상 감사시간이 상위 10%에 속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오차가 더 높음을 확인
정재욱·김진희· 임태균(2009)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등의 감사특성과 재량적 발생액 절대값으로 측정한 감사품질 간의 분석 결과,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은 음(-)의 관계, 감사보수와 감사품질은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
마희영·박성종· 허광복·이만우 (2012)	감사시간이 산업평균보다 낮게 충분히 투입되지 않았거나 감사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기업은 추후 회계 관련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비정상 감사시간이 작은 경우 감사품질이 낮아질 징후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
류승우·이종천· 김웅길·한승수 (2015)	Big4 회계법인의 감사시간과 내부심리시간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할수록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 감소로 감사품질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감사투입시간은 양(+)의 재량적 발생액과 음(-)의 재량적 발생액 모두 억제시킴
김용수·전규안 (2016)	감사투입시간이 많으면 재량적 발생액 감소로 감사품질이 높아지는데, 직급별 차이가 있으며 품질관리검토자나 등록공인회계사의 투입시간이 많은 경우와 Big4에서만 유의적인 것을 확인
권수영·김효은· 정경철(2018)	감사 초기 감사품질이 낮게 나타난 경우 이후 계속감사기간 중 감사인의 비정상 감사시간이 높아지면 감사품질 저하 현상은 완화된 것을 확인함
윤용석 (2020)	연결감사시간을 별도로 공시한 기업의 연결감사 투입시간과 감사품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

[표 3-4] 표준감사시간과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연구자	주요 내용
박종성·조은주 (2016)	한공회의 표준감사투입시간 제공 후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 감소로 나타나 감사품질은 향상되는데 다만, 실제 감사투입시간이 표준감사투입시간에 미달한 기업은 초과한 기업보다 감사품질이 유의적으로 낮았음을 확인
신현걸·정수진 (2017)	한공회가 제공한 평균 감사투입시간 자료가 감사인의 실제 감사투입시간에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한 감사품질 개선 역할을 분석한 결과, 실제 감사투입시간은 평균 감사시간에 근접하도록 조정되어 감사품질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감사 시간을 평균보다 적게 투입했던 감사인이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함
박종성·곽승우 (2018)	한공회의 평균 감사투입시간 제공을 종료할 때 감사시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평균 감사투입시간 제공을 종료한 이후에는 감사시간 증가 정도가 유의적으로 작아졌으며, 특히 non-Big4에서 더 크게 나타났음
이민우·정기위 (2020)	감사시간이 한공회의 표준감사시간보다 낮은 기업은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실제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하였으며 다만 비감사보수가 높은 그룹에서는 실제 감사시간을 표준감사시간보다 높게 투입하더라도 감사품질은 오히려 낮아진 것을 확인함
김경용·정균범 (2020)	표준감사시간제 적용에 따라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분·반기 검토시간 비중이 증가할수록 감사품질은 향상되었으며, 특히 표준감사시간 100% 미만 적용 그룹에서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사품질 향상 정도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함

2) 감사보수와 감사품질

감사보수는 감사서비스에 대한 용역대가로서 1999년 이전에는 감사보수 규정에 의거 통제되었으나 2000년부터 자유화됨에 따라 선임 형태(자유수임 또는 지정), 피감사기업의 특성(업종 및 규모, 내재위험, 내부통제 수준 등), 감사투입시간, 감사인의 특성(규모, 인적구성, 품질관리수준, 명성 등) 등을 고려한 감사시장의 경쟁 정도에 따라 피감사기업과 감사인 간 협의로 결정된다. 아울러 최근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 감사인 등록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도 감사보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감사기업 입장에서 보면 감사보수는 감사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감사보수가 높을수록 감사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측면도 상존하고 있다.

마희영·권수영(2010)은 비정상 감사보수가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오류수정발생은 비정상 감사보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나 비정상 감사보수가 높을수록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적정한 감사의 견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재무보고의 질이 낮아지는 등 감사품질이 저하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형진·송보미·최종학(2014)는 감사시장의 집중도(산업-연도별로 측정한 허핀달 지수)가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가운데 허핀달 지수와 감사보수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 감사시장의 집중도가 높으면 소수 대형 회계법인에서 감사업무 수임을 위해서 감사보수를 인하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권수영·기은선·김효은(2020)은 글로벌 산업전문성과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산업전문성만 갖춘 감사인은 감사보수 프리미엄이 없지만 양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의 산업전문성을 겸비한 감사인의 경우에는 감사보수 프리미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감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김경순·박선영·이진훤(2020)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정상 감사보수를 초과하는 비정상 감사보수가 이익조정(재량적 발생

액의 절댓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정상 감사보수는 낮은 주식성과를 보이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익조정과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경영자가 주가를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감사보수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권수영·신현걸·정재연(2007)은 감사보수는 감사인의 규모와 초과감사시간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또한 감사인이 적정감사시간을 초과하여 감사시간을 투입할 경우 이익조정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초과감사시간은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종일·최관(2009)은 비정상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감사보수가 정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재량적 발생액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감사인의 낮은 감사보수는 상대적으로 감사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최주안·박현영·이호영(2016)은 비정상 감사보수 수준을 4분위로 구분할 때 비정상 감사보수가 가장 높은 그룹을 제외하고는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지정감사에서 감사보수가 충분하지 못하면 신규 상장위험을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준혁·김새로나(2019)는 시간당감사보수(감사수익성)가 감사노력과 이익조정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감사수익성이 확보될 때 상위직급과 노하우를 갖춘 감사인의 노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감사품질이 확보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임형주(2015)는 감사보수와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으로 측정한 감사품질 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보수는 감사시간과 강력한 양(+)의 관련성이 있지만 시간당감사보수와 감사보수당 투입시간은 감사품질과 유의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세철(2020)은 초도감사의 경우 비정상 감사보수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감사보수가 할인되더라도 감사품질이 떨어지지 않았고 감사보수가 일시 할증된 경우 감사품질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감사보수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표 3-5] 감사보수와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연구자	주요 내용
권수영·신현결·정재연(2007)	감사보수는 감사인의 규모와 초과감사시간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적정감사시간을 초과하여 투입할 때 이익조정이 억제되고 초과감사시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감사보수를 청구하고 있음을 확인
박종일·최관(2009)	비정상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보수를 낮은 수준으로 지급한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감사보수가 과대지급된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함을 확인
마희영·권수영(2010)	비정상 감사시간과 비정상 감사보수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비정상 감사보수와 오류수정 발생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피감사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져 감사품질이 낮아진 것으로 설명
조형진·송보미·최종학(2014)	감사시장의 집중도(산업-연도별로 측정한 허핀달 지수)가 높을수록 감사품질(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은 떨어지며 허핀달 지수와 감사보수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 감사시장 집중도가 높으면 소수 대형 회계법인에서 감사업무 수임을 위해 감사보수를 인하시키는 것을 확인함
임형주(2015)	감사보수, 감사시간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으로 측정한 감사품질 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보수는 감사시간에 강력한 양(+) 관련성이 있지만, 시간당감사보수 및 감사보수당 투입시간은 감사노력(감사품질)과 유의성이 없음
최주안·박현영·이호영(2016)	비정상 감사보수 수준을 4분위로 구분할 때 비정상 감사보수가 제일 높은 모형을 제외하고는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지정감사에서 감사보수가 충분하지 못할수록 신규상장위험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보수가 충분할수록 효과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한 것을 확인함

연구자	주요 내용
최준혁·김새로나(2019)	시간당감사보수로 측정한 감사수익성이 이익조정으로 측정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수익성이 확보되어야 감사품질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특히 감사수익성이 높은 집단의 상위직급에서 나타남을 확인
권수영·기은선·김효은(2020)	글로벌 산업전문성과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재량적 발생액)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산업전문성이 있는 감사인은 감사보수 프리미엄을 받지만 고품질 감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확인
김경순·박선영·이진훤(2020)	비정상 감사보수(정상감사보수 초과)와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과의 관계를 측정하여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나 감사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는 초과감사보수를 이용해 경영자의 지대추구 행위가 더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
이세철(2020)	감사계약기간 동안 초도감사 중심으로 감사보수 변동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의 관계를 측정하여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보수가 할인된 경우 감사품질의 훼손은 발견 할 수 없었던 반면 감사보수가 할증되면 초도감사품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일시 할증된 감사보수는 감사품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인과 피감사기업 간 유착관계의 결과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
권수영·기은선·김효은(2020)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전문성이 있는 감사인은 감사보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반면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

3)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와 감사품질

경영자는 기업의 재무활동에 대하여 단기적인 목표 중심의 가시적인 성과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보다 낙관적으로 예측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경영자가 잠정이익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실제보다 과다 계상하여 공시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감사인은 내부감사활동을 통해 회계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이익을 산출하게 된다. 한편 경영자는 감사인의 실제이익 산출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여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감사인이 경영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교체 또는 재계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의견구매 쇼핑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 감사의견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는 감사품질과 상관관계가 높다.

손성규·이은철(2005)은 수시 공시되는 잠정이익을 경영자의 주장이라고 보고 실제이익을 감사인 의견이라고 보아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부채비율은 높을수록, ROA는 낮을수록 의견불일치 발생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런 경우에는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이 있는데 감사인이 Big5인지 또는 초도감사인지 여부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김용식(2013)은 K-IFRS 시행 이후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견불일치는 유의적으로 증가한 반면 감사의견 변형에 영향은 미치지 않은 것을 확인함으로써 감사인이 경영자의 이익 상향조정 의도를 억제시킨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최종학·정희선(2015)은 피감사기업이 의견구매 목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한 이후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여 감사품질이 하락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감사인이 non-Big4에서 non-Big4로 교체된 경우 감사품질이 낮아지는 정도가 뚜렷한 것을 발견하였다.

강내철·정래용·도용선(2017)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공시된 잠정이익이 수정된 경우를 분석한 결과, 감시시간과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감사인의 노력 증가로 감사품질이 제고되었음을 시사하였다.

김재춘·김용식(2018)은 비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전기 비적정의견 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할 경우 교체하지 않은 기업보다 감사의견이 유의하게 개선된 증거는 찾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감사품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견되는 non-Big4 회계법인을 선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와 감사품질 관계는 차별적이고 제한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타났다.

[표 3-6]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와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연구자	주요 내용
손성규·이은철 (2005)	수시 공시되는 잠정이익(경영자 주장)과 실제이익(감사인 의견)간 차이로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를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ROA가 낮을수록, Big5 회계법인과 초도감사일수록 의견불일치가 높았으며 이런 경우 경영자는 이익 상향조정 유인이 있는데도 감사인이 Big5 이거나 초도감사인 경우에 따라 제한받는다고 해석
김용식 (2013)	K-IFRS 시행 이후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견불일치는 유의적으로 증가한 반면 감사의견 변형 영향은 없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감사인이 경영자의 이익 상향조정 의도를 억제시킨 것임을 시사
최종학·정희선 (2015)	의견구매 목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사인이 non-Big4에서 non-Big4로 교체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사품질 저하현상이 더 뚜렷함을 확인
강내철·정래용· 도용선(2017)	이미 공시된 잠정실적의 수정에 대한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가 있는 상황에서 잠정실적의 수정이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시간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함으로써 감사인의 더 많은 노력으로 감사품질이 제고되었음을 시사
김재춘·김용식 (2018)	전기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할 경우 감사품질이 교체 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견되는 non-Big4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는 감사인 교체가 감사의견 구매라는 간접적인 증거라는 점을 시사

제 4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먼저 2017년 10월말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법률의 공포로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의 일환으로 2019년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최초의 연구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상장법인의 경우 그동안 자유수임감사에 의거 외부감사인을 자체적으로 선임하였으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으로 자유수임감사를 6년 동안 받은 기업은 이후부터 증선위에서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 교체된다. 이에 따라 감사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변화를 살펴보고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에 따른 감사의견 표명 성향과 관련한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변화를 확인해 봄으로써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외부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감사인 교체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회계적 문제가 있거나 상장예정법인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한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감사인 노력의 관점에서는 감사시간을, 감사비용의 관점에서는 감사보수 등에 대해 각각 단편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또한 감사품질의 관점에서는 경영자의 단기적 성과에 기반을 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로 재량적 발생액이나 이익조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에 따라 감사인 교체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투입기반 측정요소로서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변화와 함께 산출기반 측정요소로서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영자(감정이익)와 감사인(실현이익) 간의 의견불일치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외부감사인 지정제 시행 전후 또는 감사인 교체 전후에 대해 단편적으로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적용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지정 전후를 비교하는 한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 간에도 전년대비 증가 정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제 4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설정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시간의 변화

감사시간은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양적 투입요소로서 감사인이 자유수임 감사에서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 교체되면 초도감사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 피감사기업의 재무위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감사시간을 보다 많이 투입할 유인이 있다.

황인태·강선민(2006)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감사인이 자유수임에서 지정으로 변경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시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정기간에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김경률·윤용석(2019)도 자유수임감사가 지정 감사인으로 교체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사시간이 유의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유수임감사에서 지정 감사인으로 교체되는 경우 피감사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반면에 감사인 교체에 따른 감사결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감사인의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감사시간이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9월 28일 외부감사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인 측면에서 보다 강화된 방안 중 하나로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마련되어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표준감사시간제 시행 여부에 따라 감사시간이 크게 차이날 수 있어 동 제도 시행 전(2018년)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감사시간의 변화에 대한 검증은 동 제도가 전면 시행된 2019년도 이후에 대해 가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하에 감사인이 자유수임감사에서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 교체(2020년)된 상장기업은 감사시간이 지정 이전(2019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 1-1을 설정한다.

가설 1-1: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감사시간은 지정 이후연도가 지정 이전연도보다 를 것이다

아울러 신용준·김은(2010)은 자유수임감사와 지정 감사의 보수의 차이에 대한 분석한 결과에서 지정 감사인 보수가 자유수임감사인보다 평균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감사시간 증가에 따른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주기적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인이 교체되면 피감사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자유수임에 따라 교체되는 경우보다 감사결과에 대한 차별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초도감사부터 감사 노력의 일환으로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선행연구 및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 시행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감사시간 증가 정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 기업이 자유수임감사(초도) 상장기업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 1-2를 설정한다.

가설 1-2: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전년대비 감사시간 증가 정도는 자유수임초도감사 상장기업의 증가 정도보다 클 것이다.

2)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보수의 변화

자유수임감사제에서는 감사보수를 감사인과 피감사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감사시장이 경쟁적이이라서 감사인은 통상 경쟁 감사인 보다 감사보수를 낮게 제시해야 피감사기업으로부터 감사를 수임받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실제 수임가능성도 높아진다. 반면 지정 감사인은 중선위의 감리결과에 따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회계적 문제가 있거나 상장예정법인 등에 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해 감사인을 중선위에서 직접 지정함에 따라 감사보수는 일반적으로 지정 감사인의 요구와 시장의 적정가격이 반영되어 자유수임감사보다 높게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배지현·김상일·이호영(2009)의 선행연구에서 2006년부터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지정 감사인의 감사보수는 자유수임감사의 감사보수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은 지정 감사인이 경우 감사대상 기업이 회계적 문제가 있거나 상장예정법인이고 지정 감사기간도

대부분 단기간으로 정해져 감사위험이 높고 오랫동안 감사를 수행한 자유수임감사보다 피감사기업에 대한 정보나 이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감사인 교체로 인해 감사품질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거나 감사 인력 중에서도 양질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상위직급 감사인의 감사시간 비중을 늘려서 감사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도 기인한다고 한다.

한편 202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이와 달리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수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상장주식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기간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상과 기간이 직권 지정 감사인의 경우와는 다른 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주기적 감사인 지정도 자유수임감사와 달리 경쟁이 아닌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을 받게 되고 감사기간도 3년 동안 보장되기 때문에 감사보수를 할인해 줄 유인이 적은 관계로 시장에서 형성된 적정한 가격이나 감사인 명성에 맞는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9년부터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되어 그 동안 감사시간을 한공회에서 제시한 적정감사시간보다 적게 투입한 경우에는 2019년 이후부터 감사시간이 종전보다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감사보수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다만 표준감사시간제는 개별자산 규모나 상장 여부 등에 따라 대상을 11개 그룹으로 나누어 표준감사시간 시행 시기와 적용률을 2019년부터 차등 적용된다. 이로 인해 표준감사시간제 적용에 따른 감사시간 증가가 예상되며 시행 시기가 피감사기업이 속한 그룹별로 달라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통제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므로 먼저 감사보수의 변화를 비교하고 시간당 감사보수의 변화에 대해서는 추가분석을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감사인이 자유수임감사에서 주기적 지정 감사인으로 교체(2020년)된 상장기업은 교체 이전(2019년)보다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 2-1을 설정한다.

가설 2-1: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감사보수는 지정 이후연도가 지정 이전연도보다 클 것이다.

아울러 주기적 감사인 지정으로 교체되면 자유수임감사보다 감사품질 및 감사결과 차별성에 대한 부담감이 높기 때문에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거나 상위직급 감사인 비중 확대 가능성으로 인해 감사보수가 높게 제시되고 피감사기업은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자유수임감사의 경우 가격 경쟁에 의해 수임이 결정되므로 시장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준·김은(2010)이 자유수임감사와 지정감사의 보수 차이를 분석결과 지정 감사인 보수가 자유수임감사인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준화·배길수·전영순(2003)은 지정 감사인이 초도감사인 경우 자유수임감사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다.

따라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으로 전년대비 감사보수의 증가 정도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이 자유수임초도감사 상장기업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 2-2를 설정한다.

가설 2-2: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전년대비 감사보수 증가 정도는
자유수임초도감사 상장기업의 증가 정도보다 클 것이다.

3)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른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의 변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의 경영자들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객관적인 감사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가 감소할 개연성이 크며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손성규·이은철(2005)은 감사 전 잠정이익은 경영자의 의견이며 감사 후 실제이익은 감사인의 의견이라고 보고 그 차이가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로 간주하여 감사인 교체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견불일치가 발생한 기업이 의견불일치가 없는 기업보다 차기 감사인 교체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견불일치가 감사인 교체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유수임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경영자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차기 교체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견제시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3년간의 미래수임료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될 소송비용과 감독당국의 제재에 보다 중점을 두고 감사의견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또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의 경우 피감사기업의 각종 공시활동이나 경영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감사인의 명성을 보다 확고히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잠정이익을 경영자의 의견으로 보고 감사 후 실제이익을 감사인의 의견으로 보아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는 지정 이후가 이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 3-1를 설정한다.

가설 3-1: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는 지정 이후연도가 지정 이전연도보다 클 것이다.

아울러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감독당국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교체되기 때문에 피감사기업과 유착관계가 형성될 여지가 없고 특히 초도감사의 경우 차별적인 감사결과를 위해 보다 독립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한다. 반면 자유수임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의 성향이나 감사보수 제시요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기 때문에 경영자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또한 피감사기업은 필요시 감사인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수임감사인은 안정적인 감사수임 확보를 위해서 경영자와 적절한 타협이 수반될 수도 있다.

조은정·정주렴·김범준(2016)은 경영자의 능력이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영자의 능력은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에서 통계적으로 반비례한 것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감사인과의 의견불일치 및 재무제표 작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의 전년대비 증가 정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이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 3-2를 설정한다.

가설 3-2: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전년대비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증가 정도는 자유수임초도감사 상장기업의 증가 정도 보다 클 것이다.

제 2 절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개정 외부감사법상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따라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감사활동 요소(투입기반 측정치로는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산출기반 측정치로는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시간의 변화(가설 1-1, 1-2)와 감사보수의 변화(가설 2-1, 2-2)를 검증하기 위하여 김윤진·김용식·홍용식(2015) 및 김재춘·김용식(2019)의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4개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른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의 변화(가설 3-1, 3-2)를 검증하기 위하여 김용식(2013)의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2개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감사시간(LnAH)과 감사보수(LnAFEE)는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DART) 상 사업보고서에 표시된 값을 자연로그한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DAGREE)는 경영자가 감사 전에 수시공시하는 잠정이익과 감사인이 감사 후 보고하는 실제이익과의 차 이를 기초 총자산으로 나눈 절댓값을 이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범위와 복잡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감사기업의 규모나, 감사위험 측정변수들 중 선행연구들에서 유의하다고 하여 주로 활용되는 요소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이로써 총자산(LnSIZE), 부채비율(LEV), 자산수익률(ROA), 순손실여부(LOSS), 영업현금흐름(OCF)은 전년도(t-1) 분이, BIG4 회계법인(BIG)과 상장시장(MKT)은 해당연도(t) 분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예상부호는 총자산, 부채비율, 순손실여부, BIG4 회계법인은 양(+)의 방향이고 총자산이익률과 영업현금흐름비율, 상장시장은 음(-)의 방향으로 하였다. 다만, 경영자와 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는 총자산이 작을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음(-)의 방향으로 하였다. 한편 총자산성장률(GROW)는 물가상승에 따른 감사보수의 상승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추가하고 산업별더미(IND)는 산업별 특성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1) 가설 1-1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감사시간은 지정 이후연도가 지정 이전연도보다 클 것이다”라는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식 1-1)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2020년도부터 시행되므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적용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전후인 2019년과 2020년의 감사시간을 비교하였다. 여기서 관심변수(PAD_Y_{i,t})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적용된 2020년 해당 여부이므로 해당연도가 2020년이면 PAD_Y_{i,t}를 1, 2019년이면 0으로 하였다.

감사시간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후연도가 지정 이전연도보다 클 것 이므로 관심변수(PAD_Y_{i,t}) 계수(β_1)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begin{aligned} \ln AH_{i,t} = & \beta_0 + \beta_1 PAD_Y_{i,t} + \beta_2 \ln SIZE_{i,t-1} + \beta_3 LEV_{i,t-1} + \beta_4 ROA_{i,t-1} + \beta_5 GROW_{i,t} \\ & + \beta_6 LOSS_{i,t-1} + \beta_7 OCF_{i,t-1} + \beta_8 MKT_{i,t} + \beta_9 BIG_{i,t} + \Sigma IND_{i,t} \\ & + \epsilon_{i,t} \quad \dots \quad (\text{식 } 1-1) \end{aligned}$$

여기서,

$\ln AH_{i,t}$: t년도 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log감사시간)

$PAD_Y_{i,t}$: t년도가 2020년이면 1, 아니면 0

$\ln SIZE_{i,t-1}$: t-1년도 총자산의 자연로그값(log총자산)

$LEV_{i,t-1}$: t-1년도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ROA_{i,t-1}$: t-1년도 총자산 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GROW_{i,t}$: t년도 총자산 성장을

$[(t\text{년도 총자산} - t-1\text{년도 총자산})/t-1\text{년도 총자산}]$

$LOSS_{i,t-1}$: t-1년도가 당기순손실이면 1, 아니면 0

$OCF_{i,t-1}$: t-1년도 영업현금흐름비율(영업현금흐름/총자산)

$MKT_{i,t}$: t년도 유가증권 상장기업이면 1, 코스닥 상장기업이면 0

$BIG_{i,t}$: t년도 감사인이 BIG4(삼일, 안진, 삼정, 한영)이면 1, 아니면 0

$\Sigma IND_{i,t}$: 산업 더미변수(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구분)

$\epsilon_{i,t}$: 잔차항

2) 가설 1-2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전년대비 감사시간 증가 정도는 자유수임 초도감사 상장기업의 증가 정도보다 클 것이다”라는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식 1-2)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여기서 관심변수($PAD_{i,t}$)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여부이다.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2019년과 2020년 자료 간 변화값을 이용하였으며 2020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적용된 기업은 $PAD_{i,t}$ 를 1, 그렇지 않은 기업(자유수임초도감사)은 0으로 한다.

감사시간 증가 정도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적용된 기업이 자유수임 감사 기업보다 클 것이므로 관심변수($PAD_{i,t}$)의 계수(β_1)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begin{aligned}\Delta \ln AH_{i,t} = & \beta_0 + \beta_1 PAD_{i,t} + \beta_2 \Delta \ln SIZE_{i,t-1} + \beta_3 \Delta LEV_{i,t-1} + \beta_4 \Delta ROA_{i,t-1} \\ & + \beta_5 \Delta GROW_{i,t} + \beta_6 LOSS_{i,t-1} + \beta_7 \Delta OCF_{i,t-1} + \beta_8 MKT_{i,t} + \beta_9 BIG_{i,t} \\ & + \Delta IND_{i,t} + \epsilon_{i,t} \quad \dots \quad (\text{식 } 1-2)\end{aligned}$$

주) 변수의 정의 : (식 1-1) 참조. 다만,

$PAD_{i,t}$: t년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적용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Delta \ln AH_{i,t}$: 감사시간 자연로그값_{i,t} - 감사시간 자연로그값_{i,t-1}

$\Delta \ln SIZE_{i,t-1}$: 총자산의 자연로그값_{i,t-1} - 총자산의 자연로그값_{i,t-2}

$\Delta LEV_{i,t-1}$: 부채비율_{i,t-1} - 부채비율_{i,t-2}

$\Delta ROA_{i,t-1}$: 총자산 순이익률_{i,t-1} - 총자산 순이익률_{i,t-2}

$\Delta GROW_{i,t}$: 총자산 성장률_{i,t} - 총자산 성장률_{i,t-2}

$\Delta OCF_{i,t-1}$: 영업현금흐름비율_{i,t-1} - 영업현금흐름비율_{i,t-2}

3) 가설 2-1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감사보수는 지정 이후연도가 지정 이전연도보다 클 것이다”라는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식 2-1)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2020년도부터 시행되므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적용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과 2020

년의 감사보수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관심변수(PAD_{i,t})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적용된 2020년 해당 여부이므로 해당연도가 2020년이면 PAD_{i,t}를 1, 2019년이면 0으로 하였다. 감사보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후연도가 지정 이전연도보다 클 것이므로 관심변수(PAD_{i,t}) 계수(β_1)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begin{aligned} \ln \text{AFEE}_{i,t} = & \beta_0 + \beta_1 \text{PAD}_{i,t} + \beta_2 \ln \text{SIZE}_{i,t-1} + \beta_3 \text{LEV}_{i,t-1} + \beta_4 \text{ROA}_{i,t-1} + \beta_5 \text{GROW}_{i,t} \\ & + \beta_6 \text{LOSS}_{i,t-1} + \beta_7 \text{OCF}_{i,t-1} + \beta_8 \text{MKT}_{i,t} + \beta_9 \text{BIG}_{i,t} + \Delta \text{IND}_{i,t} \\ & + \epsilon_{i,t} \quad \dots \quad (\text{식 } 2-1) \end{aligned}$$

주) 변수의 정의 : (식 1-1) 참조. 다만,
 $\ln \text{AFEE}_{i,t}$: t년도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4) 가설 2-2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전년대비 감사보수 증가 정도는 자유수임감사 상장기업의 증가 정도보다 클 것이다”라는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식 2-2)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여기서 관심변수(PAD_{i,t})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여부이다.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2019년과 2020년 자료 간 변화값을 이용하였으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적용된 기업은 PAD_{i,t}를 1, 그렇지 않은 기업(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은 0으로 한다.

감사보수 증가 규모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적용된 기업이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보다 클 것이므로 관심변수(PAD_{i,t})의 계수(β_1)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begin{aligned} \Delta \ln \text{AFEE}_{i,t} = & \beta_0 + \beta_1 \text{PAD}_{i,t} + \beta_2 \Delta \ln \text{SIZE}_{i,t-1} + \beta_3 \Delta \text{LEV}_{i,t-1} + \beta_4 \Delta \text{ROA}_{i,t-1} \\ & + \beta_5 \Delta \text{GROW}_{i,t} + \beta_6 \Delta \text{LOSS}_{i,t-1} + \beta_7 \Delta \text{OCF}_{i,t-1} + \beta_8 \Delta \text{MKT}_{i,t} \\ & + \beta_9 \Delta \text{BIG}_{i,t} + \Delta \text{IND}_{i,t} + \epsilon_{i,t} \quad \dots \quad (\text{식 } 2-2) \end{aligned}$$

주) 변수의 정의 : (식 1-2) 참조. 다만,
 $\Delta \ln \text{AFEE}_{i,t}$: 감사보수 자연로그 값_{i,t} - 감사보수 자연로그 값_{i,t-1}

5) 가설 3-1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는 지정 이후연도가 지정 이전연도보다 클 것이다”라는 가설 3-1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식 3-1)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2020년도부터 시행되므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과 2020년의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관심변수(PAD_Y_{i,t})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적용된 2020년 해당 여부이므로 해당연도가 2020년이면 PAD_Y_{i,t}를 1, 2019년이면 0으로 한다.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는 경영자가 수시공시는 잠정이익과 감사인이 감사 후 보고하는 실제이익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기업의 규모별 당기순이익의 차이를 고려해 잠정이익과 실제이익 간 차이를 기초 총자산으로 나눈 절댓값을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로 측정한다.

(식 3-1)의 종속변수인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DAGREE_{i,t})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후연도가 지정 이전연도보다 클 것이므로 관심변수(PAD_Y_{i,t}) 계수(β_1)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begin{aligned} DAGREE_{i,t} = & \beta_0 + \beta_1 PAD_Y_{i,t} + \beta_2 LnSIZE_{i,t-1} + \beta_3 LEV_{i,t-1} + \beta_4 ROA_{i,t-1} \\ & + \beta_5 GROW_{i,t} + \beta_6 LOSS_{i,t-1} + \beta_7 OCF_{i,t-1} + \beta_8 MKT_{i,t} + \beta_9 BIC_{i,t} \\ & + \beta_{10} IND_{i,t} + \epsilon_{i,t} \quad \dots \quad (\text{식 } 3-1) \end{aligned}$$

주) 변수의 정의 : (식 1-1) 참조. 다만,

DAGREE_{i,t} : t년도 (잠정이익 - 실제이익)을 기초 총자산으로 나눈 절댓값

6) 가설 3-2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전년대비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증가 정도는 자유수임초도감사 상장기업의 증가 정도보다 클 것이다”라는 가설 3-2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식 3-2)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여기서 관심변수(PAD_{i,t})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여부이다. 가설 3-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2019년과 2020년 자료 간 변화값을 이용하였

으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적용된 기업은 $PAD_{i,t}$ 를 1, 그렇지 않은 기업은(자유수임초도감사) 0으로 한다.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증가 정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이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보다 클 것이므로 관심변수($PAD_{i,t}$) 계수(β_1)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begin{aligned}\Delta DAGREE_{i,t} = & \beta_0 + \beta_1 PAD_{i,t} + \beta_2 \Delta \ln SIZE_{i,t-1} + \beta_3 \Delta LEV_{i,t-1} + \beta_4 \Delta ROA_{i,t-1} \\ & + \beta_5 \Delta GROW_{i,t} + \beta_6 LOSS_{i,t-1} + \beta_7 \Delta OCF_{i,t-1} + \beta_8 MKT_{i,t} \\ & + \beta_9 BIG_{i,t} + \Sigma IND_{i,t} + \epsilon_{i,t} \quad \dots \quad (\text{식 3-2})\end{aligned}$$

주) 변수의 정의 : (식 1-2) 참조. 다만,

$\Delta DAGREE_{i,t}$: $\{\text{t년도 (감정이익 - 실제이익)} \text{을 기초 총자산으로 나눈 절댓값}\} - \{\text{t-1년도 (감정이익 - 실제이익)} \text{을 기초 총자산으로 나눈 절댓값}\}$



제 3 절 연구표본 선정

본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연구 표본은 외부감사대상 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2019년과 2020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금융업 및 보험업 제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2020년 사업연도부터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지정 전후를 비교하기 때문이다. 다만 12월 결산이 아닌 기업, 3개년 재무자료가 없는 기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감사보수, 감사시간 등 감사인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등은 제외하고 금융감독원(증선위)에서 2020년 사업연도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 시 2018년말 개별자산 기준 1,826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동 기준 미만인 기업도 제외하였다. 또한 2019년과 2020년에 잠정이익을 공시하지 않은 기업도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유효 표본은 1,392개(2019년 684개, 2020년 708개)이다. 한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은 2020년 유효 표본(708개) 중에서 2019년 까지 6년간 자유수임하고 2020년 감사인이 교체된 156개를 선정하였다. 이로써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156개)의 지정 전후를 비교하는 가설(1-1, 2-1, 3-1)에 사용된 표본은 연도별 156개씩 총 312개이다. 또한 2020년 유효 표본(708개)에서 감사인이 자유수임으로 교체된 기업은 52개, 직권 지정으로 교체된 기업은 69개이다. 따라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감사 기업 간 전년대비 증가 정도를 비교하는 가설(1-2, 2-2, 3-2)에 사용된 표본은 연도별 208개(주기적 지정 156개, 자유수임 52개)씩 총 416개이다.

표본의 관측치 자료 중 감사시간이나 감사보수 등 감사인 관련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재무자료(연결기준)는 NICE신용평가(주)의 KIS-VALUE, 잠정이익은 (주)에프앤가이드를 통해 수집하였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 실시, 2019.10.16 일)에 따르면 2020년 사업연도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은 220개(금융업 및 보험업 포함)이다. 그러나 주기적 지정 기업 명단 미공개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여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참고하거나

기업별 유선전화 등을 통해 수임 형태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156개), 자유수임초도(52개), 직권 지정(69개)으로 최종 분류하였다.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재무자료의 연속형 변수 상하 99% 초과값인 극단치는 각각 그 이내로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표 4-1] 연구표본 구성

항 목		기업-연도수(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금융업 및 보험업 제외)		4,366			
제외 대상	1)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90			
	2) 2018~2020년 중 자료 입수 불가 기업	84			
	3) 감사인 자료(감사보수,감사시간 등) 입수 불가 기업	4			
	4) 총자산 1,826억원 미만 (2018년말 개별자산 기준)	2,492			
	5) 2019년 및 2020년 잠정이익 미공시 기업	304			
전체 유효 표본		1,392 (2019년 684, 2020년 708)			
A.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156개)의 지정 전후 비교 : 가설 1-1, 2-1, 3-					
	2019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전)	156			
	2020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 후)	156			
	최종 표본	312			
B.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감사 기업의 전년대비 증가 정도 비교 : 가설 1-2, 2-2, 3-2, 추가분석 ¹⁾					
		주기적 지정	자유수임	합계	직권 지정
	2019년	156	52	208	69
	2020년	156	52	208	69
	최종 표본	312	104	416	138

주 1) 시간당감사보수를 이용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감사 기업 간 비교,
직권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감사 기업 간 비교

제 5 장 실증분석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5-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패널 A는 전체 유효표본($N=1,392$)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로서 $\text{LnAH}_{i,t}$ 는 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으로 평균(중위수), 최솟값, 최댓값은 각 7.907(7.720), 6.745, 10.254이며, $\text{LnAFEE}_{i,t}$ 는 감사보수의 자연로그값으로 각 12.370(12.206), 10.714, 14.869이다. 이는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모두 평균이 중위수보다 약간 크게 나타나 미미하지만 대형표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를 나타내는 $\text{DAGREE}_{i,t}$ 평균은 0.002로서 공시된 잠정이익과 실제이익과의 차이가 기초 총자산의 0.2% 수준임을 알 수 있다. $\text{PAD}_Y_{i,t}$ 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적용 연도의 더미변수(2020년이면 1, 2019년이면 0) 평균은 0.509로서 지정 이후인 2020년 기업 표본 수가 약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text{PAD}_{i,t}$ 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156개)으로서 평균은 0.126로 전체 표본에서 12.6%를 차지한다. $\text{LnSIZE}_{i,t-1}$ 는 총자산의 자연로그값으로 평균(중위수)이 20.656(20.300)이고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 19.024, 24.737로 중위수 이후부터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부채비율($\text{LEV}_{i,t-1}$) 평균은 0.475로 나타나 47.5%로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총자산이익률($\text{ROA}_{i,t-1}$) 평균(중위수)은 0.021(0.020)로서 2%대이며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 -0.197, 0.179로서 넓게 펼쳐 있다. 총자산성장률($\text{GROW}_{i,t}$) 평균(0.068)은 중위수(0.041)보다 크게 나타나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손실여부($\text{LOSS}_{i,t-1}$) 평균은 0.255로서 25.5%가 적자 기업임을 알 수 있다. 영업현금흐름($\text{OCF}_{i,t-1}$) 평균(중위수)은 0.050(0.047)이며, 상장시장($\text{MKT}_{i,t}$) 평균은 0.657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ext{BIG}_{i,t}$ 는 평균이 0.591로서 Big4 회계법인이 5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통계 결과는 전체 표본업체가 2018년 기말총자산(개별 기준) 1,826억원 이상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패널 B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156개)을 대상으로 지정 전(2019년)과 지정 후(2020년)를 비교하는 총 312개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이다. 감사시간($\ln AH_{i,t}$) 평균(7.810)은 중위수(7.644)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최솟값과 최대값은 6.498, 9.858로서 중위수 이상에서 감사시간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감사보수($\ln AFEE_{i,t}$) 평균(12.329)도 중위수(12.181)를 약간 상회하고 최솟값과 최대값은 10.714, 14.509로서 감사보수도 역시 중위수 이상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DAGREE_{i,t}$) 평균은 0.001로서 감정이익과 실체이익 차이가 기초 총자산의 0.1% 수준으로 나타났다. $\ln SIZE_{i,t-1}$ 는 총자산의 자연로그값으로 평균(중위수)이 20.624(20.368)이고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 19.025, 24.422로 중위수 이후부터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부채비율($LEV_{i,t-1}$) 평균은 0.447로서 44.7%이고, 최대는 87.7%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이며, 총자산이익률($ROA_{i,t-1}$) 평균(0.027)은 중위수(0.020)보다 크게 나타나 대형표본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자산성장률($GROW_{i,t}$) 평균(0.071)은 중위수(0.039)보다 크게 나타나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손실여부($LOSS_{i,t-1}$) 평균은 0.228로서 22.8%가 적자 기업임을 알 수 있다. 영업현금흐름($OCF_{i,t-1}$) 평균(중위수)은 0.052(0.049)이며, 상장시장 ($MKT_{i,t}$) 평균은 0.596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IG_{i,t}$ 는 평균이 0.478로서 Big4 회계법인이 47.8%를 차지하고 있다.

패널 C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 총 208개 표본을 대상으로 2020년도 기준으로 전년(2019년)대비 증가 정도(변화값)을 나타낸 기술통계 결과이다. 감사시간 증가 정도($\Delta \ln AH_{i,t}$)의 평균(0.201)은 중위수(0.178)보다 높았으며 최소값은 -0.667를 보여 감사시간이 감소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수 증가 정도($\Delta \ln AFEE_{i,t}$)의 평균(0.404)은 중위수(0.417)보다 낮고 최솟값은 -1.330을 보여 감사보수 역시 감소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증가 정도($\Delta DAGREE_{i,t}$)의 평균은 -0.001로서 예상과 달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AD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 여부로서 평균이 0.750로 나

타나 비교 표본(208개) 중 75%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이라는 것이다. 총자산($\Delta \text{LnSIZE}_{i,t-1}$)과 부채비율($\Delta \text{LEV}_{i,t-1}$) 증가 정도의 평균은 각 0.084, 0.010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총자산이익률($\Delta \text{ROA}_{i,t-1}$)과 총자산성장률($\Delta \text{GROW}_{i,t}$) 증가 정도의 평균은 각 -0.016, -0.036으로 나타나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손실여부($\text{LOSS}_{i,t-1}$) 평균은 0.255로서 25.5%가 적자 기업임을 알 수 있고, 상장시장($\text{MKT}_{i,t}$) 평균은 0.591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보다 더 많으며, $\text{BIG}_{i,t}$ 는 평균이 0.361로서 Big4 회계법인이 36.1%를 차지하고 있다.



[표 5-1] 기술통계

패널 A. 전체 표본(2019년, 2020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중위수	최댓값
LnAH	1,392	7.907	0.787	6.745	7.720	10.254
LnAFEE	1,392	12.370	0.853	10.714	12.206	14.869
DAGREE	1,392	0.002	0.006	0.000	0.000	0.043
PAD_Y	1,392	0.509	0.500	0.000	1.000	1.000
PAD	1,392	0.126	0.332	0.000	0.000	1.000
LnSIZEt_1	1,392	20.656	1.324	19.024	20.300	24.737
LEVt_1	1,392	0.475	0.202	0.067	0.490	0.897
ROAt_1	1,392	0.021	0.057	-0.197	0.020	0.179
GROW	1,392	0.068	0.169	-0.358	0.041	0.850
LOSSt_1	1,392	0.255	0.436	0.000	0.000	1.000
OCFt_1	1,392	0.050	0.066	-0.134	0.047	0.245
MKT	1,392	0.657	0.475	0.000	1.000	1.000
BIG	1,392	0.591	0.492	0.000	1.000	1.000

주 1) 각 변수의 정의는 식(1-1)~식(3-2)을 참조

[표 5-1] 기술통계 (계속)

패널 B. 가설 1-1, 2-1, 3-1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중위수	최댓값
LnAH	312	7.810	0.714	6.498	7.644	9.858
LnAfee	312	12.329	0.768	10.714	12.181	14.509
DAGREE	312	0.001	0.003	0.000	0.000	0.015
PAD_Y	312	0.500	0.500	0.000	0.500	1.000
LnSIZEt_1	312	20.624	1.224	19.025	20.368	24.422
LEVt_1	312	0.447	0.208	0.072	0.460	0.877
ROAt_1	312	0.027	0.053	-0.197	0.020	0.233
GROW	312	0.071	0.148	-0.225	0.039	0.783
LOSSt_1	312	0.228	0.420	0.000	0.000	1.000
OCFt_1	312	0.052	0.063	-0.116	0.049	0.236
MKT	312	0.596	0.491	0.000	1.000	1.000
BIG	312	0.478	0.500	0.000	0.000	1.000

주 1) 각 변수의 정의는 식(1-1)~식(3-2)을 참조

[표 5-1] 기술통계 (계속)

패널 C. 가설 1-2, 2-2, 3-2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중위수	최댓값
△LnAH	208	0.201	0.291	-0.667	0.178	1.064
△LnAFEE	208	0.404	0.395	-1.330	0.417	1.524
△DAGREE	208	-0.001	0.010	-0.030	0.000	0.041
PAD	208	0.750	0.434	0.000	1.000	1.000
△LnSIZEt_1	208	0.084	0.177	-0.551	0.046	1.115
△LEVt_1	208	0.010	0.064	-0.258	0.003	0.221
△ROAt_1	208	-0.016	0.075	-0.714	-0.010	0.171
△GROW	208	-0.036	0.304	-1.710	-0.017	2.914
LOSSt_1	208	0.255	0.437	0.000	0.000	1.000
△OCFt_1	208	0.015	0.071	-0.174	0.006	0.231
MKT	208	0.591	0.493	0.000	1.000	1.000
BIG	208	0.361	0.481	0.000	0.000	1.000

주 1) 각 변수의 정의는 식(1-1)~식(3-2)을 참조

제 2 절 단변량 분석

연구 가설별 단변량 분석결과는 [표 5-2]에 제시되어 있다. A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지정 전후를 비교한 결과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지정 이후 감사시간($\ln AH_{i,t}$)과 감사보수($\ln AFEE_{i,t}$)의 평균(7.923, 12.591)은 지정 이전(7.697, 12.067)보다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크게 나타나 가설 1-1과 2-1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DAGREE $_{i,t}$) 평균은 지정 이후(0.001)가 지정 이전(0.002)보다 1% 유의수준에서 작게 나타나고 방향성도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 가설 3-1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예상과 다른 결과로서 회귀분석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도록 한다.

통제변수는 총자산($\ln SIZE_{i,t-1}$)과 영업현금흐름비율($OCF_{i,t-1}$) 평균이 지정 이후(20.664, 0.060)가 지정 이전(20.585, 0.045)보다 1% 수준에서 크게 나타나 자산규모 및 영업현금흐름비율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채비율($LEV_{i,t-1}$)과 순손실여부($LOSS_{i,t-1}$) 평균도 지정 이후(0.452, 0.250)가 지정 이전(0.442, 0.205)보다 각 5%와 10% 유의수준에서 큰 것으로 나타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손실기업이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반면 총자산이익률($ROA_{i,t-1}$)과 BIG4 회계법인($BIG_{i,t}$)의 지정 이후 평균(0.020, 0.372)은 지정 이전(0.033, 0.583)보다 1% 유의수준에서 작게 나타나 총자산이익률이 감소하고 BIG4 회계법인도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B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의 전년대비 증가 정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감사시간의 증가 정도($\Delta \ln AH_{i,t}$)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 평균(0.226)이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 평균(0.127)보다 5% 유의수준에서 큰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를 지지하였다. 감사보수의 증가 정도($\Delta \ln AFEE_{i,t}$)는 주기적 지정 감사인 지정 기업의 평균(0.524)이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의 평균(0.043)보다 1% 유의수준에서 크게 나타나 가설 2-2를 역시 지지하였다. 한편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증가 정도($\Delta DAGREE_{i,t}$)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평균(-0.001)이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의 평균(0.001)보다 유의수준은 아니지만 작게 나타나고 방향성도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 가설 3-2를 지지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에서는 모두 유의수준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2] 단변량 분석

A.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전후(가설 1-1, 2-1, 3-1)

변수명	주기적 지정 전 (2019년, N=156)		주기적 지정 후 (2020년, N=156)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LnAH _{i,t}	7.697	0.709	7.923	0.703	10.220 ***
LnAFEE _{i,t}	12.067	0.768	12.591	0.676	20.780 ***
DAGREE _{i,t}	0.002 (0.0017)	0.003	0.001 (0.0009)	0.002	-2.784 ***
LnSIZE _{i,t-1}	20.585	1.220	20.664	1.230	6.354 ***
LEV _{i,t-1}	0.442	0.204	0.452	0.212	2.096 **
ROA _{i,t-1}	0.033	0.061	0.020	0.042	-3.681 ***
GROW _{i,t}	0.086	0.165	0.055	0.127	-2.120 **
LOSS _{i,t-1}	0.205	0.405	0.250	0.434	1.303 *
OCF _{i,t-1}	0.045	0.063	0.060	0.061	2.741 ***
BIG _{i,t}	0.583	0.495	0.372	0.485	-5.481 ***

주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1, 2-1, 3-1) 참조

2) ()내는 숫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소수점 이하 자리수를 확대하여 표시

3)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증)

B. 주기적 지정과 자유수임감사 기업의 전년대비 증가 정도(가설 1-2, 2-2, 3-2)

변수명	주기적 지정 (2020년-2019년, N=156)		자유수임감사 (2020년-2019년, N=52)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Delta \text{LnAH}_{i,t}$	0.226	0.276	0.127	0.324	2.134 ^{**}
$\Delta \text{LnAFEE}_{i,t}$	0.524	0.315	0.043	0.395	8.927 ^{***}
$\Delta \text{DAGREE}_{i,t}$	-0.001 (-0.0008)	0.004	0.001 (0.00001)	0.008	-0.975
$\Delta \text{LnSIZE}_{i,t-1}$	0.079	0.155	0.097	0.230	-0.648
$\Delta \text{LEV}_{i,t-1}$	0.010	0.059	0.011	0.079	-0.078
$\Delta \text{ROA}_{i,t-1}$	-0.013	0.045	-0.026	0.129	1.026
$\Delta \text{GROW}_{i,t}$	-0.031	0.182	-0.050	0.522	0.384
$\text{LOSS}_{i,t-1}$	0.250	0.434	0.269	0.448	-0.274
$\Delta \text{OCF}_{i,t-1}$	0.015	0.070	0.014	0.075	0.090
$\text{BIG}_{i,t}$	0.372	0.485	0.327	0.474	0.581

- 주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식(1-2, 2-2, 3-2) 참조
 2) ()내는 숫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소수점 이하 자리수를 확대하여 표시
 3)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증)

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감사시간($\ln AH_{i,t}$), 감사보수($\ln AFEE_{i,t}$),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DAGREE_{i,t}$)이며, 주된 관심변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연도($PAD_Y_{i,t}$)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PAD_{i,t}$)으로서 [표 5-3]는 가설별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패널 A는 전체 표본(1,392개)에 대한 상관관계로서 감사시간($\ln AH_{i,t}$)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연도($PAD_Y_{i,t}$), 총자산($\ln SIZE_{i,t-1}$), 부채비율($LEV_{i,t-1}$), 영업현금흐름비율($OCF_{i,t-1}$), 상장시장($MKT_{i,t}$), BIG4 회계법인($BIG_{i,t}$)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양(+) 관계를 보였으며 순손실여부($LOSS_{i,t-1}$)은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감사보수($\ln AFEE_{i,t}$)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연도($PAD_Y_{i,t}$),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PAD_{i,t}$), 총자산($\ln SIZE_{i,t-1}$), 부채비율($LEV_{i,t-1}$), 영업현금흐름비율($OCF_{i,t-1}$), 상장시장($MKT_{i,t}$), BIG4 회계법인($BIG_{i,t}$)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양(+) 관계를 보였다.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DAGREE_{i,t}$)는 총자산($\ln SIZE_{i,t-1}$), 총자산이익률($ROA_{i,t-1}$), 영업현금흐름비율($OCF_{i,t-1}$)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인 반면 순손실여부($LOSS_{i,t-1}$)과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PAD)은 부채비율($LEV_{i,t-1}$)과 상장시장($MKT_{i,t}$), BIG4 회계법인($BIG_{i,t}$)에 대해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인 반면 영업현금흐름비율($OCF_{i,t-1}$)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패널 B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연도별 156개씩 총 312개 표본)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는 지정 이후가 지정 이전보다 크다는 가설 1-1, 2-1, 3-1에 관한 상관관계이다. 관심변수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연도($PAD_Y_{i,t}$)는 종속변수인 감사시간($\ln AH_{i,t}$)과 감사보수($\ln AFEE_{i,t}$)에 대해서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인 반면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DAGREE_{i,t}$)에 대해서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반면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와는 오히려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통제변수 중 총자산이익률($ROA_{i,t}$)과 총자산성장률($GROW_{i,t}$), BIG4 회계법인($BIG_{i,t}$)은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영업현금흐름비율($OCF_{i,t-1}$)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패널 C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156개)이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52개)보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의 증가 정도가 더 크다는 가설 1-2, 2-2, 3-2에 관한 상관관계이다. 관심변수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PAD_{i,t}$)은 종속변수인 감사시간의 증가 정도($\Delta LnAH_{i,t}$)에 대해서는 5% 수준, 감사보수의 증가 정도($\Delta LnAFEE_{i,t}$)에 대해서는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은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보다 전년대비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증가 정도가 모두 유의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증가 정도($\Delta DAGREE_{i,t}$)에 대해서는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들은 모두 일관되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상관관계

패널 A. 전체표본(2019년, 2020년)

	LnAH	LnAfee	DAGREE	PAD_Y	PAD	LnSIZEt_1	LEVt_1	ROAt_1	GROW	LOSSt_1	OCFt_1	MKT	BIG
LnAH	1												
LnAfee	0.946*** (0.000)	1											
DAGREE	-0.106*** (0.000)	-0.090*** (0.001)	1										
PAD_Y	0.089*** (0.001)	0.163*** (0.000)	-0.020 (0.458)	1									
PAD	-0.007 (0.789)	0.087*** (0.001)	-0.054 (0.043)	0.373*** (0.000)	1								
LnSIZEt_1	0.862*** (0.000)	0.825*** (0.000)	-0.141*** (0.000)	0.020 (0.449)	-0.013 (0.619)	1							
LEVt_1	0.226*** (0.000)	0.225*** (0.000)	-0.048* (0.071)	0.012 (0.659)	-0.065** (0.015)	0.223*** (0.000)	1						
ROAt_1	0.015 (0.582)	-0.003 (0.923)	-0.176*** (0.000)	-0.062** (0.020)	0.017 (0.522)	0.059** (0.028)	-0.331*** (0.000)	1					
GROW	-0.024 (0.378)	-0.023 (0.393)	0.031 (0.253)	-0.091*** (0.001)	-0.011 (0.689)	-0.019 (0.471)	-0.061 (0.023)	0.193*** (0.000)	1				
LOSSt_1	-0.046* (0.089)	-0.032 (0.233)	0.172*** (0.000)	0.025 (0.361)	-0.028 (0.297)	-0.116*** (0.000)	0.256*** (0.000)	-0.688*** (0.000)	-0.134*** (0.000)	1			
OCFt_1	0.102*** (0.000)	0.092*** (0.001)	-0.104*** (0.000)	0.081*** (0.003)	0.082*** (0.002)	0.083*** (0.002)	-0.112*** (0.000)	0.466*** (0.000)	0.065** (0.015)	-0.294*** (0.000)	1		
MKT	0.398*** (0.000)	0.369*** (0.000)	-0.008 (0.766)	-0.012 (0.662)	-0.059** (0.028)	0.421*** (0.000)	0.084*** (0.002)	-0.037 (0.172)	-0.058** (0.032)	-0.032 (0.239)	-0.014 (0.609)	1	
BIG	0.552*** (0.000)	0.519*** (0.000)	-0.030 (0.258)	-0.089*** (0.001)	-0.165*** (0.000)	0.444*** (0.000)	0.014 (0.613)	0.124*** (0.000)	0.017 (0.526)	-0.110*** (0.000)	0.108*** (0.000)	0.276*** (0.000)	1

주 1) 변수 정의는 (식 1-1~3-2) 참조

2) ***는 1% 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증), ()내는 유의확률

패널 B. 가설 1-1, 2-1, 3-1

	LnAH	LnAFEE	DAGREE	PAD_Y	LnSIZEt_1	LEVt_1	ROAt_1	GROW	LOSSt_1	OCFt_1	MKT	BIG
LnAH	1											
LnAFEE	0.937*** (0.000)	1										
DAGREE	-0.227*** (0.000)	-0.264*** (0.000)	1									
PAD_Y	0.158*** (0.005)	0.341*** (0.000)	-0.152*** (0.007)	1								
LnSIZEt_1	0.830*** (0.000)	0.784*** (0.000)	-0.226*** (0.000)	0.032 (0.569)	1							
LEVt_1	0.081 (0.155)	0.095* (0.093)	-0.056 (0.321)	0.024 (0.675)	0.121** (0.032)	1						
ROAt_1	0.073 (0.199)	0.054 (0.340)	-0.133 (0.019)	-0.127** (0.025)	0.099* (0.081)	-0.387*** (0.000)	1					
GROW	-0.027 (0.631)	-0.059 (0.302)	0.180*** (0.001)	-0.105* (0.065)	0.004 (0.948)	0.072 (0.207)	0.127** (0.025)	1				
LOSSt_1	-0.054 (0.341)	-0.026 (0.642)	0.162*** (0.004)	0.054 (0.346)	-0.132** (0.020)	0.268*** (0.000)	-0.608*** (0.000)	-0.075 (0.188)	1			
OCFt_1	0.178*** (0.002)	0.201*** (0.000)	-0.154*** (0.007)	0.122** (0.031)	0.078 (0.171)	-0.135** (0.017)	0.446*** (0.000)	0.018 (0.758)	-0.214*** (0.000)	1		
MKT	0.356*** (0.000)	0.320*** (0.000)	-0.140** (0.014)	0.000 (1.000)	0.389*** (0.000)	0.013 (0.822)	-0.039 (0.490)	-0.062 (0.278)	0.026 (0.647)	-0.005 (0.925)	1	
BIG	0.490*** (0.000)	0.403*** (0.000)	-0.072 (0.206)	-0.212*** (0.000)	0.391*** (0.000)	-0.062 (0.279)	0.125** (0.027)	0.110* (0.052)	-0.075 (0.186)	0.130** (0.022)	0.133** (0.019)	1

주 1) 변수 정의는 (식 1-1, 2-1, 3-1) 참조

2) ***는 1% 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증), ()내는 유의확률

패널 C. 가설 1-2, 2-2, 3-2

	$\triangle \text{LnAH}$	$\triangle \text{LnAFEE}$	$\triangle \text{DAGREE}$	PAD	$\triangle \text{LnSIZEt}_{-1}$	$\triangle \text{LEVt}_{-1}$	$\triangle \text{ROAt}_{-1}$	$\triangle \text{GROW}$	LOSS_{-1}	$\triangle \text{OCFt}_{-1}$	MKT	BIG
$\triangle \text{LnAH}$	1											
$\triangle \text{LnAFEE}$	0.435*** (0.000)	1										
$\triangle \text{DAGREE}$	-0.043 (0.539)	-0.012 (0.866)	1									
PAD	0.147** (0.034)	0.528*** (0.000)	-0.110 (0.115)	1								
$\triangle \text{LnSIZEt}_{-1}$	0.014 (0.846)	-0.090 (0.198)	0.079 (0.256)	-0.045 (0.518)	1							
$\triangle \text{LEVt}_{-1}$	-0.042 (0.543)	-0.073 (0.294)	-0.307*** (0.000)	-0.005 (0.938)	0.393*** (0.000)	1						
$\triangle \text{ROAt}_{-1}$	0.030 (0.663)	0.092 (0.184)	-0.086 (0.217)	0.071 (0.306)	0.190*** (0.006)	-0.189*** (0.006)	1					
$\triangle \text{GROW}$	0.088 (0.204)	0.141** (0.042)	0.103 (0.137)	0.027 (0.701)	-0.604*** (0.000)	-0.317*** (0.000)	0.003 (0.968)	1				
LOSS_{-1}	-0.158** (0.023)	-0.037 (0.598)	0.090 (0.196)	-0.019 (0.784)	-0.170** (0.014)	0.121* (0.083)	-0.145** (0.036)	0.075 (0.283)	1			
$\triangle \text{OCFt}_{-1}$	0.040 (0.569)	0.021 (0.767)	-0.016 (0.821)	0.006 (0.929)	-0.002 (0.980)	0.062 (0.374)	-0.030 (0.672)	-0.083 (0.234)	-0.002 (0.974)	1		
MKT	0.034 (0.623)	0.031 (0.658)	0.072 (0.303)	0.017 (0.808)	-0.014 (0.837)	0.094 (0.175)	-0.105 (0.131)	0.036 (0.604)	0.037 (0.594)	-0.073 (0.297)	1	
BIG	0.306*** (0.000)	0.000 (0.999)	0.004 (0.954)	0.040 (0.562)	0.127* (0.068)	0.084 (0.226)	-0.132* (0.058)	0.065 (0.349)	-0.140** (0.043)	-0.024 (0.726)	0.217*** (0.002)	1

주 1) 변수 정의는 (식 1-2, 2-2, 3-2) 참조

2) ***는 1% 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양측검증), ()내는 유의확률

제 4 절 가설 검증 결과

1) 가설 1-1의 검증

(식 1-1)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감사시간은 지정 이후연도가 지정 이전연도보다 클 것이다”라는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시간($\ln AH_{i,t}$)을 종속변수, 지정 연도를 나타낸 $PAD_Y_{i,t}$ (2020년이면 1, 2019년이면 0)를 관심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5-4]와 같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적용 연도인 $PAD_Y_{i,t}$ 계수가 양(+)의 값을 보이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은 지정 이전보다 지정 이후의 감사시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4]의 검증결과에서 관심변수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연도($PAD_Y_{i,t}$) 계수는 0.236으로 1% 수준에서 종속변수인 감사시간($\ln AH_{i,t}$)과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은 지정 이후연도의 감사시간이 지정 이전연도보다 클 것이라는 가설 1-1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윤경·문상혁(2015)의 선행연구에서 감사인 지정(직권) 후 감사시간이 증가한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 결국 회계적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상장기업의 경우에도 감독당국(증선위)의 주기적 지정으로 감사인이 교체되면 감사시간은 지정 이전보다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들의 계수에서는 총자산($\ln SIZE_{i,t-1}$)과 BIG4 회계법인($BIG_{i,t}$)은 예상대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규모가 클수록, 지정 감사인이 BIG4 회계법인일수록 감사시간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상장시장($MKT_{i,t}$)은 예상과 달리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유가증권(코스피) 시장 상장기업일수록 감사시간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F값이 28.87로 1% 수준에서 유의하고 Adj. R^2 는 79.4%를 보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한 결과 VIF값은 모두 10보다 크게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표 5-4] 가설 1-1의 검증 결과

$$\begin{aligned} \ln AH_{i,t} = & \beta_0 + \beta_1 PAD_{Y_{i,t}} + \beta_2 \ln SIZE_{i,t-1} + \beta_3 LEV_{i,t-1} + \beta_4 ROA_{i,t-1} + \beta_5 GROW_{i,t} + \beta_6 LOSS_{i,t-1} \\ & + \beta_7 OCF_{i,t-1} + \beta_8 MKT_{i,t} + \beta_9 BIG_{i,t} + \Sigma IND_{i,t} + \epsilon_{i,t} \quad (\text{식 } 1-1) \end{aligned}$$

독립변수	예상 부호	종속변수 : $\ln AH_{i,t}$		
		계수	t 값	VIF
(상수)	+/-	-1.262 ***	-3.13	-
$PAD_{Y_{i,t}}$	+	0.236 ***	5.89	1.19
$\ln SIZE_{i,t-1}$	+	0.426 ***	20.65	1.89
$LEV_{i,t-1}$	+	-0.040	-0.34	1.83
$ROA_{i,t-1}$	-	-0.411	-0.74	2.55
$GROW_{i,t}$	+	-0.137	-0.98	1.25
$LOSS_{i,t-1}$	+	0.089	1.47	1.89
$OCF_{i,t-1}$	-	0.597	1.53	1.76
$MKT_{i,t}$	-	0.112 **	2.40	1.56
$BIG_{i,t}$	+	0.312 ***	6.47	1.73
$\Sigma IND_{i,t}$	포함			
F 값	28.87 <.0001			
$Adj. R^2$	0.794 ($R^2=0.822$)			
N	312 (주기적 지정 기업 156개 * 2개년)			

주1) 변수의 정의

$\ln AH_{i,t}$: t년도 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log감사시간)

$PAD_{Y_{i,t}}$: t년도가 2020년이면 1, 아니면 0

$\ln SIZE_{i,t-1}$: t-1년도 총자산의 자연로그값(log총자산)

$LEV_{i,t-1}$: t-1년도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ROA_{i,t-1}$: t-1년도 총자산 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GROW_{i,t}$: t년도 총자산 성장률

$[(t\text{년도 총자산} - t-1\text{년도 총자산})/t-1\text{년도 총자산}]$

$LOSS_{i,t-1}$: t-1년도가 당기순손실이면 1, 아니면 0

$OCF_{i,t-1}$: t-1년도 영업현금흐름비율(영업현금흐름/총자산)

$MKT_{i,t}$: t년도 유가증권 상장기업이면 1, 코스닥 상장기업이면 0

$BIG_{i,t}$: t년도 감사인이 BIG4(삼일, 안진, 삼정, 한영)이면 1, 아니면 0

$\Sigma IND_{i,t}$: 산업 더미변수(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구분)

$\epsilon_{i,t}$: 잔차항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양측검증)

2) 가설 1-2의 검증

(식 1-2)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감사시간 증가 정도는 자유수임초도감사 상장기업의 증가 정도보다 클 것이다”라는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처음 적용된 2020년도 상장기업 중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감사시간의 증가 정도($\Delta \ln AH_{i,t}$, 변화값)를 종속변수로 하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을 나타내는 $PAD_{i,t}$ 를 관심변수(주기적 지정 기업이면 1, 자유수임 기업이면 0)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5]과 같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을 표시한 $PAD_{i,t}$ 의 계수가 양(+)의 값을 나타낸다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감사시간 증가 정도가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의 감사시간 증가 정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5]의 검증결과에서 관심변수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PAD_{i,t}$)의 계수는 0.130으로 1% 수준에서 종속변수인 감사시간의 증가 정도($\Delta \ln AH_t$)와 양(+)의 관계를 보여주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감사시간 증가 정도가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의 감사시간 증가 정도보다 클 것이라는 가설 1-2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경률·윤용석 (2019)의 선행연구에서 자유수임감사에서 지정 감사로 교체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사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2020년 사업연도부터 처음 적용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인이 교체된 기업은 자유수임에 의해 교체된 기업보다 감사시간이 전년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들의 계수에서는 $BIG4_{i,t}$ 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나 주기적 감사인으로 $BIG4$ 회계법인이 지정된 경우 감사시간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통제변수들은 감사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F값이 1.62로서 5% 수준에서 유의하고 Adj. R²는 11.8%를 보였다.

[표 5-5] 가설 1-2의 검증 결과

$$\begin{aligned}\Delta \ln AH_{i,t} = & \beta_0 + \beta_1 PAD_{i,t} + \beta_2 \Delta \ln SIZE_{i,t-1} + \beta_3 \Delta LEV_{i,t-1} + \beta_4 \Delta ROA_{i,t-1} + \beta_5 \Delta GROW_{i,t} \\ & + \beta_6 LOSS_{i,t-1} + \beta_7 \Delta OCF_{i,t-1} + \beta_8 MKT_{i,t} + \beta_9 BIG_{i,t} + \varepsilon_{i,t} \quad (\text{식 1-2})\end{aligned}$$

독립변수	예상 부호	종속변수 : $\Delta \ln AH_{i,t}$		
		계수	t 값	VIF
(상수)	+/-	0.011	0.14	-
$PAD_{i,t}$	+	0.130***	2.64	1.27
$\Delta \ln SIZE_{i,t-1}$	+	-0.108	-0.53	3.65
$\Delta LEV_{i,t-1}$	+	-0.009	-0.02	1.69
$\Delta ROA_{i,t-1}$	-	0.052	0.18	1.38
$\Delta GROW_{i,t}$	+	-0.001	-0.01	5.96
$LOSS_{i,t-1}$?	-0.046	-0.93	1.29
$\Delta OCF_{i,t-1}$	-	0.235	0.79	1.22
$MKT_{i,t}$?	-0.008	-0.17	1.30
$BIG_{i,t}$?	0.193***	3.82	1.64
$\varepsilon_{i,t}$	포함			
F 값	1.62 < 0.016			
Adj. R^2	0.118 ($R^2=0.310$)			
N	208 (주기적 지정 156개, 자유수임 52개)			

주 1) 변수의 정의 : (식 1-1) 참조. 다만,

$PAD_{i,t}$: t년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적용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Delta \ln AH_{i,t}$: 감사시간 자연로그값 $_{i,t}$ - 감사시간 자연로그값 $_{i,t-1}$

$\Delta \ln SIZE_{i,t-1}$: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_{i,t-1}$ -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_{i,t-2}$

$\Delta LEV_{i,t-1}$: 부채채비율 $_{i,t-1}$ - 부채비율 $_{i,t-2}$

$\Delta ROA_{i,t-1}$: 총자산 순이익률 $_{i,t-1}$ - 총자산 순이익률 $_{i,t-2}$

$\Delta GROW_{i,t}$: 총자산 성장률 $_{i,t}$ - 총자산 성장률 $_{i,t-1}$

$\Delta OCF_{i,t-1}$: 영업현금흐름비율 $_{i,t-1}$ - 영업현금흐름비율 $_{i,t-2}$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양측검증)

4) 가설 2-1의 검증

(식 2-1)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감사보수는 지정 이후연도가 지정 이전연도보다 클 것이다”라는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보수($\ln AFEE_{i,t}$)를 종속변수, 지정 연도를 나타낸 $PAD_Y_{i,t}$ (2020년이면 1, 2019년이면 0)를 관심변수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6]과 같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적용 연도인 $PAD_Y_{i,t}$ 계수가 양(+)의 값을 보이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은 지정 이전보다 지정 이후의 감사보수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6]의 검증결과에서 관심변수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연도($PAD_Y_{i,t}$)의 계수는 0.525로 1% 수준에서 종속변수인 감사보수($\ln AFEE_{i,t}$)와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은 지정 이후연도의 감사보수가 지정 이전연도보다 클 것이라는 가설 2-1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황인태·강선민(2006), 김윤경·문상혁(2015)의 선행연구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감사인 지정 기간의 감사보수는 비자정 기간보다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로써 감사인을 주기적 지정으로 교체할 경우 감사보수는 지정 이후가 지정 이전보다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들의 계수에서는 총자산($\ln SIZE_{i,t-1}$)과 BIG4 회계법인($BIG_{i,t}$)은 예상대로 1% 수준에서, 순손실여부($LOSS_{i,t-1}$)는 5% 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규모가 클수록, 주기적 지정 감사인은 BIG4 회계법인일수록, 순손실이 발생한 기업일수록 감사보수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상장시장($MKT_{i,t}$)은 예상과 달리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일수록 감사보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F값이 27.87로 1% 수준에서 유의하고 Adj. R^2 도 78.8%를 보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한 결과 VIF값이 모두 10보다 크게 작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표 5-6] 가설 2-1의 검증 결과

$$\begin{aligned}
 \ln AFEE_{i,t} = & \beta_0 + \beta_1 PAD_{-Y_{i,t}} + \beta_2 \ln SIZE_{i,t-1} + \beta_3 LEV_{i,t-1} + \beta_4 ROA_{i,t-1} \\
 & + \beta_5 GROW_{i,t} + \beta_6 LOSS_{i,t-1} + \beta_7 OCF_{i,t-1} + \beta_8 MKT_{i,t} + \beta_9 BIG_{i,t} \\
 & + \varepsilon_{i,t} \quad \dots \quad (\text{식 } 2-1)
 \end{aligned}$$

독립변수	예상 부호	종속변수 : $\ln AFEE_{i,t}$		
		계수	t 값	VIF
(상수)	+/-	3.080***	7.00	-
$PAD_{-Y_{i,t}}$	+	0.525***	12.02	1.19
$\ln SIZE_{i,t-1}$	+	0.426***	18.90	1.89
$LEV_{i,t-1}$	+	-0.029	-0.22	1.83
$ROA_{i,t-1}$	-	0.089	0.15	2.55
$GROW_{i,t}$	+	-0.216	-1.42	1.25
$LOSS_{i,t-1}$	+	0.156**	2.37	1.89
$OCF_{i,t-1}$	-	0.439	1.03	1.76
$MKT_{i,t}$	-	0.124**	2.43	1.56
$BIG_{i,t}$	+	0.257***	4.87	1.73
$\varepsilon_{i,t}$		포함		
F 값		27.87 <.0001		
$Adj. R^2$		0.788 ($R^2=0.817$)		
N		312		

주 1) 변수의 정의 : (식 1-1) 참조. 다만,
 $\ln AFEE_{i,t}$: t년도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양측검증)

6) 가설 2-2의 검증

(식 2-2)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감사보수 증가 정도는 자유수임감사 상장기업의 증가 정도보다 클 것이다”라는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처음 적용된 2020년도 상장기업 중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보수의 증가 정도($\Delta \text{LnAFEE}_{i,t}$)를 종속변수,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을 나타낸 $\text{PAD}_{i,t}$ (주기적 지정 1, 자유수임 0)를 관심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7]과 같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을 표시한 $\text{PAD}_{i,t}$ 의 계수가 양(+)의 값을 나타낸다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이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보다 감사보수의 증가 정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7]의 검증결과에서 관심변수인 $\text{PAD}_{i,t}$ 의 계수는 예상대로 0.535로 1% 수준에서 종속변수인 감사보수의 증가 정도($\Delta \text{LnAFEE}_{i,t}$)와 양(+)의 관계를 보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감사보수 증가 정도가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보다 클 것이라는 가설 2-2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황인태·강선민(2006)과 신용준·김은(2010)의 선행연구에서 감사인 지정 기업의 감사보수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로써 주기적 지정으로 감사인이 교체되면 자유수임으로 교체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감사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감사기업 입장에서 보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통제변수들의 계수는 대부분 예상과 다른 방향성을 보였지만 유의수준은 아니다. 모형계수의 총괄검증에서 F값이 2.8로 1% 수준에서 유의하고 Adj. R²는 28.1%로 나타났다. VIF값은 모두 10보다 작아 다중공성선 문제는 없었다.

[표 5-7] 가설 2-2의 검증 결과

$$\begin{aligned}
 \Delta \ln AFEE_{i,t} = & \beta_0 + \beta_1 PAD_{i,t} + \beta_2 \Delta \ln SIZE_{i,t-1} + \beta_3 \Delta LEV_{i,t-1} + \beta_4 \Delta ROA_{i,t-1} \\
 & + \beta_5 \Delta GROW_{i,t} + \beta_6 LOSS_{i,t-1} + \beta_7 \Delta OCF_{i,t-1} + \beta_8 MKT_{i,t} + \beta_9 BIG_{i,t} \\
 & + \Sigma IND_{i,t} + \epsilon_{i,t} \quad \dots \quad (\text{식 } 2-2)
 \end{aligned}$$

독립변수	예상 부호	종속변수 : $\Delta \ln AFEE_{i,t}$		
		계수	t 값	VIF
(상수)	+/-	-0.078	-0.76	-
$PAD_{i,t}$	+	0.535***	8.86	1.27
$\Delta \ln SIZE_{i,t-1}$	+	-0.377	-1.49	3.65
$\Delta LEV_{i,t-1}$	+	-0.279	-0.59	1.69
$\Delta ROA_{i,t-1}$	-	0.203	0.56	1.38
$\Delta GROW_{i,t}$	+	-0.195	-1.04	5.96
$LOSS_{i,t-1}$?	-0.022	-0.36	1.29
$\Delta OCF_{i,t-1}$	-	0.129	0.36	1.22
$MKT_{i,t}$?	0.030	0.56	1.30
$BIG_{i,t}$?	0.002	0.03	1.64
$\Sigma IND_{i,t}$		포함		
F 값		2.8 <.0001		
$Adj. R^2$		0.281 ($R^2=0.438$)		
N		208		

주 1) 변수의 정의 : (식 1-2) 참조. 다만,

$\Delta \ln AFEE_{i,t}$: 감사보수 자연로그값 $_{i,t}$ - 감사보수 자연로그값 $_{i,t-1}$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양측검증)

7) 가설 3-1의 검증

(식 3-1)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는 지정 이후연도가 지정 이전연도보다 클 것이다”라는 가설 3-1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DAGREE_{i,t})를 종속변수,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연도를 나타낸 PAD_Y_{i,t}(2020년이면 1, 2019년이면 0)를 관심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8]과 같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적용 연도인 PAD_Y_{i,t} 계수가 양(+)의 값을 보이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는 지정 이후가 지정 이전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8]의 검증결과에서 관심변수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연도(PAD_Y_{i,t}) 계수는 -0.001로서 5% 수준에서 종속변수인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DAGREE_{i,t})와 음(-)의 관계를 보여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로써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은 지정 이후연도가 지정 이전연도보다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가 클 것이라는 가설 3-1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반대의 결과는 단변량 분석결과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의한 교체로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교체 전 자유수임감사 기간의 마지막 연도(2019년)에 감사인의 보수적인 감사로 인해 2019년도의 의견불일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에 따라 나타난 반사효과 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표 5-9]과 같이 기간별로 T-검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9]의 패널 A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전인 자유수임감사 기간 중 마지막 연도(2019년)와 직년연도(2018년) 또는 2014~2018년 평균을 각각 비교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마지막 연도(2019년)의 의견불일치는 0.0017로서 직년연도(0.0006)와 2014~2018년 평균(0.0008)보다도 1% 유의수준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패널 B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후인 2020년도와 2018년 또는 2014~2018년 평균과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는 지정 이후가 지정 이전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전

인 2019년도 자유수임감사의 마지막 감사에서 감사를 보수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2019년도의 의견불일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지정 직전 감사를 담당한 자유수임감사인이 교체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자신의 명성 훼손을 방지하고자 마지막 감사를 보수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제변수들의 계수에서 총자산($\ln\text{SIZE}_{i,t-1}$)은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나 자산규모는 작을수록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총자산성장률($\text{GROW}_{i,t}$)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나 외형 성장이 클수록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채비율($\text{LEV}_{i,t-1}$)은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8] 가설 3-1의 검증 결과

$$\begin{aligned}
 DAGREE_{i,t} = & \beta_0 + \beta_1 PAD_{-Y_{i,t}} + \beta_2 LnSIZE_{i,t-1} + \beta_3 LEV_{i,t-1} + \beta_4 ROA_{i,t-1} + \beta_5 GROW_{i,t} \\
 & + \beta_6 LOSS_{i,t-1} + \beta_7 OCF_{i,t-1} + \beta_8 MKT_{i,t} + \beta_9 BIG_{i,t} + \Sigma IND_{i,t} \\
 & + \epsilon_{i,t} \quad \dots \quad (\text{식 } 3-1)
 \end{aligned}$$

독립변수	예상 부호	종속변수 : $DAGREE_{i,t}$		
		계수	t 값	VIF
(상수)	+/-	0.010	3.21	-
$PAD_{-Y_{i,t}}$	+	-0.001**	-2.33	1.19
$LnSIZE_{i,t-1}$	-	-0.001**	-2.36	1.89
$LEV_{i,t-1}$	+	-0.002**	-2.18	1.83
$ROA_{i,t-1}$	-	-0.007	1.63	2.55
$GROW_{i,t}$	+	0.004***	3.93	1.25
$LOSS_{i,t-1}$	+	0.001	1.36	1.89
$OCF_{i,t-1}$	-	-0.003	-1.17	1.76
$MKT_{i,t}$	-	-0.001	-0.64	1.56
$BIG_{i,t}$	+	-0.001	-0.13	1.73
$\Sigma IND_{i,t}$		포함		
F 값		2.77 <.0001		
$Adj. R^2$		0.149 ($R^2=0.267$)		
N		312		

주 1) 변수의 정의 : (식 1-1) 참조. 다만,

$DAGREE_{i,t}$: t년도 (감정이익 - 실제이익)을 기초 총자산으로 나눈 절댓값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양측검증)

[표 5-9]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기간별 의견불일치 차이

A.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전(자유수임 기간 중)				
2018년(N=145)		2019년(N=156)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0.0006	0.0013	0.0017	0.0031	3.858***
2014~2018년(평균, N=648)		2019년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0.0008	0.0019	0.0017	0.0031	3.436***

B.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전(자유수임 기간)과 지정 후 비교				
2018년(N=145)		2020년(N=156)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0.0006	0.0013	0.0009	0.0020	1.276
2014~2018년(평균, N=648)		2020년(N=156)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0.0008	0.0019	0.0009	0.0020	0.531

주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양측검증)

9) 가설 3-2의 검증

(식 3-2)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전년대비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증가 정도는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의 증가 정도보다 클 것이다”라는 가설 3-2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처음 적용된 2020년도 상장기업 중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 초도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증가 정도($\Delta DAGREE_{i,t}$)를 종속변수,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을 나타낸 $PAD_{i,t}$ (주기적 지정 기업이면 1, 자유수임 기업이면 0)를 관심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10]과 같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을 표시한 $PAD_{i,t}$ 의 계수가 양 (+)의 값을 나타낸다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이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보다 전년대비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증가 정도(변화값)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10]의 검증결과에서 관심변수인 $PAD_{i,t}$ 의 계수는 -0.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3-2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로써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이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보다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의 전년대비 증가 정도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도 신외부 감사법 시행으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 확대⁶⁾ 등 감사 환경 변화로 감사인이 감사활동을 종전보다 보수적으로 수행하고 경영자는 회계처리를 보다 정확하게 처리할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이동훈 외(2019)의 선행연구에서 신외부감사법 시행 전부터 감사가 보수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분석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에서는 총자산 증가 정도($\Delta \ln SIZE_{i,t-1}$)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자산규모 증가는 의견불일치의 증가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부채비율 증가 정도($\Delta LEV_{i,t-1}$)도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나 의견불일치의 증가와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총자산이익률 증가 정도($\Delta ROA_{i,t-1}$)는 1%

6) 적용시기는 직전연도 개별자산 총액기준 2019년은 2조원 이상, 2020년은 5천억원 이상, 2022년은 전체 상장사이며, 연결기준 재무정보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
(금융감독원 2021.9.24, 보도자료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로, 총자산성장률 증가 정도($\triangle GROW_{i,t}$)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나 예상부호와 일치하였다.

[표 5-10] 가설 3-2의 검증 결과

$$\begin{aligned}\triangle DAGREE_{i,t} = & \beta_0 + \beta_1 PAD_{i,t} + \beta_2 \triangle LnSIZE_{i,t-1} + \beta_3 \triangle LEV_{i,t-1} + \beta_4 \triangle ROA_{i,t-1} \\ & + \beta_5 \triangle GROW_{i,t} + \beta_6 LOSS_{i,t-1} + \beta_7 \triangle OCF_{i,t-1} + \beta_8 MKT_{i,t} + \beta_9 BIG_{i,t} \\ & + \Sigma IND_{i,t} + \epsilon_{i,t} \quad \dots \quad (\text{식 } 3-2)\end{aligned}$$

독립변수	예상 부호	종속변수 : $\triangle DAGREE_{i,t}$		
		계수	t 값	VIF
(상수)	+/-	-0.001	-0.51	-
$PAD_{i,t}$	+	-0.001	-0.78	1.27
$\triangle LnSIZE_{i,t-1}$	-	0.010***	2.79	3.65
$\triangle LEV_{i,t-1}$	+	-0.022***	-3.15	1.69
$\triangle ROA_{i,t-1}$	-	-0.019***	-3.60	1.38
$\triangle GROW_{i,t}$	+	0.008***	2.83	5.96
$LOSS_{i,t-1}$?	0.001	0.33	1.29
$\triangle OCF_{i,t-1}$	-	0.003	0.62	1.22
$MKT_{i,t}$?	0.001	0.80	1.30
$BIG_{i,t}$?	0.001	0.27	1.64
$\Sigma IND_{i,t}$	포함			
F 값	1.68 <.01			
$Adj. R^2$	0.129 ($R^2=0.319$)			
N	208			

주 1) 변수의 정의 : (식 1-2) 참조. 다만,

$\triangle DAGREE_{i,t}$: t년도 (잠정이익 - 실제이익)을 기초 총자산으로 나눈 절댓값 - t-1년도 (잠정이익 - 실제이익)을 기초 총자산으로 나눈 절댓값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양측검증)

제 5 절 가설검증의 요약

본 연구는 2020년 사업연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처음 적용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시간, 감사보수,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에 대하여 지정 전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 간에는 2020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증가 정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전후 감사시간의 변화를 검증한 결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후(2020년)의 감사시간이 지정 이전(2019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이 지지되었다.

둘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감사시간 증가 정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감사시간 증가 정도는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의 증가 정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도 지지되었다.

셋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전후 감사보수의 변화를 검증한 결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후(2020년)의 감사보수는 지정 이전(2019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이 지지되었다.

넷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감사보수 증가 정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감사보수 증가 정도는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의 증가 정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도 지지되었다.

다섯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전후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를 검증한 결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후(2020년)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가 지정 이전(2019년)보다 작게 나타나 가설 3-1은 지지되지 않았다.

여섯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의 증가 정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의 전년대비 증가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2도 지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에 대한 지정 전후의 분석결과에서는 지정 이후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더 클 것이라는 가설 1-1과 가설 2-1이 지지된 반면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는 지정 이후가 반대로 작게 나와 가설 3-1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로써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처음 적용된 2020년 사업연도에는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지정 이후가 이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크게 증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으로 인해 감사품질의 투입기반 측정요소인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증가에 따라 감사인의 노력과 감사비용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후가 지정 이전보다 예상과 달리 반대로 작게 나타나 선행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전의 자유수임감사 기간 중 마지막 연도(2019년)에 감사인이 감사를 보수적으로 실시하여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반사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에 따라 감사인 교체 직전 보수적인 감사가 유발되어 감사인의 독립성은 선제적으로 강화되고 감사인 교체 직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20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 간의 전년대비 증가 정도(변화값)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가설 2개(1-2, 2-2)가 지지되고, 가설 1개(3-2)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로써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전년대비 증가 정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이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보다 더 크다는 것이 확인된 반면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의 전년대비 증가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통제변수에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에 대한 지정 전후 비교에서 주로 총자산과 BIG4 회계법인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감사 기업 간의 전년대비 증가 정도에서는 종속변수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었다.

[표 5-11] 가설검증 결과 요약

가설	가설내용	예상 부호	연구결과	
			β_1	결론
가설 1-1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감사시간은 지정 이후가 지정 이전보다 클 것이다	+	+ (***)	지지
가설 1-2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전년대비 감사시간의 증가 정도는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의 증가 정도보다 클 것이다	+	+ (***)	지지
가설 2-1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감사보수는 지정 이후가 지정 이전보다 클 것이다	+	+ (***)	지지
가설 2-2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전년대비 감사보수의 증가 정도는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의 증가 정도보다 클 것이다	+	+ (***)	지지
가설 3-1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는 지정 이후가 지정 이전보다 클 것이다	+	- (**)	기각
가설 3-2	주기적 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의 전년대비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증가 정도는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의 증가 정도보다 클 것이다	+	- ()	기각

주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양측검증)

제 6 절 추가분석

1) 시간당감사보수를 이용한 비교

2019년 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되어 개별자산 규모나 상장여부 등에 따라 대상을 11개 그룹으로 나누어 시기와 적용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표준감사시간제 적용에 따른 감사시간 증가가 예상되지만 시행 시기가 피감사기업이 속한 그룹별로 달라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감사보수 비교에 대한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당감사보수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5-12]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전후 시간당감사보수($\ln HAFEE_{i,t}$)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후연도(PAD_Y_{i,t})의 계수는 0.290으로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시간당감사보수는 이후 연도(2020년)가 이전 연도(2019년)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후의 감사보수가 지정 이전보다 크다는 본 분석 가설 2-1에 대한 검증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동 가설의 지지에 대한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표 5-13]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시간당감사보수의 증가 정도($\Delta \ln HAFEE_{i,t}$) 차이에 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PAD_{i,t})의 계수는 0.410으로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나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이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보다 전년대비 시간당감사보수의 증가 정도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감사보수 증가 정도가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보다 크다는 본 분석 가설 2-2의 검증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동 가설의 지지에 대한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표준감사시간제 차등 적용에 따른 가변성 여부를 최소화하고자 시간당감사보수를 이용한 추가분석을 통해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에 대한 지정 전후 비교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 간 전년대비 증가 정도의 비교에서 모두 본 분석결과(가설 2-1, 2-2)와 동일하

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표 5-12] 추가분석(시간당감사보수-주기적 감사인 지정 전후)

$$\begin{aligned} \ln HAFEE_{i,t} = & \beta_0 + \beta_1 PAD_{i,t} + \beta_2 \ln SIZE_{i,t-1} + \beta_3 LEV_{i,t-1} + \beta_4 ROA_{i,t-1} + \beta_5 GROW_{i,t} \\ & + \beta_6 LOSS_{i,t-1} + \beta_7 OCF_{i,t-1} + \beta_8 MKT_{i,t} + \beta_9 BIG_{i,t} + \Sigma IND_{i,t} + \epsilon_{i,t} \end{aligned}$$

독립변수	예상 부호	종속변수 : $\ln HAFEE_{i,t}$		
		계수	t 값	VIF
(상수)	+/-	4.323 ***	16.58	-
$PAD_{i,t}$	+	0.290 ***	11.20	1.19
$\ln SIZE_{i,t-1}$	+	0.001	0.04	1.89
$LEV_{i,t-1}$	+	0.018	0.23	1.83
$ROA_{i,t-1}$	-	0.524	1.46	2.55
$GROW_{i,t}$	+	-0.095	-1.06	1.25
$LOSS_{i,t-1}$	+	0.069 *	1.77	1.89
$OCF_{i,t-1}$	-	-0.073	-0.29	1.76
$MKT_{i,t}$	-	0.007	0.23	1.56
$BIG_{i,t}$	+	-0.053 *	-1.70	1.73
$\Sigma IND_{i,t}$	포함			
F 값	5.08 <.0001			
$Adj. R^2$	0.361 ($R^2=0.449$)			
N	312			

주 1) 변수의 정의 : (식 1-1) 참조. 다만,

$\ln HAFEE_{i,t}$: t년도 감사보수 / t년도 감사시간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양측검증)

[표 5-13] 추가분석(시간당감사보수-주기적 지정과 자유수임)

$$\begin{aligned}\Delta \ln HAFEE_{i,t} = & \beta_0 + \beta_1 PAD_{i,t} + \beta_2 \Delta \ln SIZE_{i,t-1} + \beta_3 \Delta LEV_{i,t-1} + \beta_4 \Delta ROA_{i,t-1} \\ & + \beta_5 \Delta GROW_{i,t} + \beta_6 LOSS_{i,t-1} + \beta_7 \Delta OCF_{i,t-1} + \beta_8 MKT_{i,t} \\ & + \beta_9 BIG_{i,t} + \mathcal{Z}IND_{i,t} + \epsilon_{i,t}\end{aligned}$$

독립변수	예상 부호	종속변수 : $\Delta \ln HAFEE_{i,t}$		
		계수	t 값	VIF
(상수)	+/-	-0.103	-1.05	-
$PAD_{i,t}$	+	0.410***	7.03	1.27
$\Delta \ln SIZE_{i,t-1}$	+	-0.187	-0.77	3.65
$\Delta LEV_{i,t-1}$	+	-0.231	-0.51	1.69
$\Delta ROA_{i,t-1}$	-	0.090	0.25	1.38
$\Delta GROW_{i,t}$	+	-0.166	-0.92	5.96
$LOSS_{i,t-1}$?	0.028	0.48	1.29
$\Delta OCF_{i,t-1}$	-	0.012	-0.04	1.22
$MKT_{i,t}$?	0.039	0.74	1.30
$BIG_{i,t}$?	-0.186***	-3.10	1.64
$\mathcal{Z}IND_{i,t}$	포함			
F 값	2.31 <.0001			
Adj. R^2	0.221 ($R^2=0.391$)			
N	208			

주 1) 변수의 정의 : (식 1-2) 참조. 다만,

$\Delta \ln HAFEE_{i,t}$: (t년도 감사보수 / t년도 감사시간) -

(t-1년도 감사보수 / t-1년도 감사시간)

$PAD_{i,t}$: t년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적용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양측검증)

2) 직권 지정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 간 비교

증선위에서 외부감사인 지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외에도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상장예정법인, 요청 등의 사유로 지정하는 직권 지정이 있다. 이러한 직권 지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과 같이 피감사기업의 자유 의지와 무관하게 증선위가 지정하게 되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결정방식,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성격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 간의 감사시간, 감사보수,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에 대한 전년대비 증가 정도를 검증한 가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직권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에 대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여 본 분석의 해당 가설에 대한 강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표 5-14]는 직권 지정 기업(69개)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52개)을 대상으로 종속변수인 감사시간의 전년대비 증가 정도($\Delta \ln AH_{i,t}$)에 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검증결과 관심변수인 직권 지정 기업($DAD_{i,t}$)의 계수는 0.073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15]은 직권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종속변수인 감사보수의 전년대비 증가 정도($\Delta \ln AFEE_{i,t}$)에 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검증결과 관심변수인 직권 지정 기업($DAD_{i,t}$)의 계수는 0.613으로서 1% 수준에서 종속변수인 감사보수의 전년대비 증가 정도($\Delta \ln AFEE_{i,t}$)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본 분석 가설 2-2의 검증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직권 지정 기업도 감사보수의 전년대비 증가 정도에서 주기적 지정 기업과 같이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6]은 직권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종속변수인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의 전년대비 증가 정도($\Delta DAGREE_{i,t}$)에 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검증결과 관심변수인 직권 지정 기업($DAD_{i,t}$)의 계수는 0.001이나 통계적으로도 유의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본 분석 가설 3-2의 검증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추가분석을 통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과 유사한 직권 지정 기업도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과의 비교에서 감사시간을 제외하고 감사보수의 증가 정도와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증가 정도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얻어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표 5-14] 추가분석(감사시간-직권 지정과 자유수임)

$$\begin{aligned}\Delta \ln AH_{i,t} = & \beta_0 + \beta_1 DAD_{i,t} + \beta_2 L \Delta nSIZE_{i,t-1} + \beta_3 \Delta LEV_{i,t-1} + \beta_4 \Delta ROA_{i,t-1} \\ & + \beta_5 \Delta GROW_{i,t} + \beta_6 LOSS_{i,t-1} + \beta_7 \Delta OCF_{i,t-1} + \beta_8 MKT_{i,t} \\ & + \beta_9 BIG_{i,t} + \Sigma IND_{i,t} + \epsilon_{i,t}\end{aligned}$$

독립변수	예상 부호	종속변수 : $\Delta \ln AH_{i,t}$		
		계수	t 값	VIF
(상수)	+/-	0.060	0.55	-
$DAD_{i,t}$	+	0.073	1.01	1.84
$\Delta \ln SIZE_{i,t-1}$	+	0.046	0.24	2.35
$\Delta LEV_{i,t-1}$	+	-0.098	-0.20	1.93
$\Delta ROA_{i,t-1}$	-	0.090	0.24	2.15
$\Delta GROW_{i,t}$	+	0.103	1.04	2.01
$LOSS_{i,t-1}$?	0.017	0.23	1.87
$\Delta OCF_{i,t-1}$	-	-0.390	-0.99	1.29
$MKT_{i,t}$?	0.012	0.17	1.61
$BIG_{i,t}$?	0.264 ***	3.48	1.81
$\Sigma IND_{i,t}$	포함			
F 값	1.45 < 0.078			
Adj. R ²	0.139 ($R^2=0.448$)			
N	121			

주 1) 변수의 정의 : (식 1-2) 참조. 다만,

$DAD_{i,t}$: t년도 직권 지정(초도감사)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양측검증)

[표 5-15] 추가분석(감사보수-직권 지정과 자유수임)

$$\begin{aligned}\Delta \ln AFE_{i,t} = & \beta_0 + \beta_1 DAD_{i,t} + \beta_2 \Delta nSIZE_{i,t-1} + \beta_3 \Delta LEV_{i,t-1} + \beta_4 \Delta ROA_{i,t-1} \\ & + \beta_5 \Delta GROW_{i,t} + \beta_6 LOSS_{i,t-1} + \beta_7 \Delta OCF_{i,t-1} + \beta_8 MKT_{i,t} \\ & + \beta_9 BIG_{i,t} + \varepsilon_{i,t} + \epsilon_{i,t}\end{aligned}$$

독립변수	예상 부호	종속변수 : $\Delta \ln AFE_{i,t}$		
		계수	t 값	VIF
(상수)	+/-	-0.193	-1.24	-
$DAD_{i,t}$	+	0.613***	5.94	1.84
$\Delta \ln SIZE_{i,t-1}$	+	0.563**	2.12	2.35
$\Delta LEV_{i,t-1}$	+	-0.249	-0.36	1.93
$\Delta ROA_{i,t-1}$	-	-0.039	-0.07	2.15
$\Delta GROW_{i,t}$	+	0.405***	2.89	2.01
$LOSS_{i,t-1}$?	0.129	1.25	1.87
$\Delta OCF_{i,t-1}$	-	-0.382	-0.69	1.29
$MKT_{i,t}$?	0.167*	1.72	1.61
$BIG_{i,t}$?	0.037	0.34	1.81
$\varepsilon_{i,t}$	포함			
F 값	2.03 <.003			
Adj. R^2	0.270 ($R^2=0.532$)			
N	121			

주 1) 변수의 정의 : (식 2-2) 참조. 다만,

$DAD_{i,t}$: t년도 직권 지정(초도감사)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양측검증)

[표 5-16] 추가분석(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직권 지정과 자유수임)

$$\begin{aligned}\Delta DAGREE_{i,t} = & \beta_0 + \beta_1 DAD_{i,t} + \beta_2 \Delta LnSIZE_{i,t-1} + \beta_3 \Delta LEV_{i,t-1} + \beta_4 \Delta ROA_{i,t-1} \\ & + \beta_5 \Delta GROW_{i,t} + \beta_6 LOSS_{i,t-1} + \beta_7 \Delta OCF_{i,t-1} + \beta_8 MKT_{i,t} \\ & + \beta_9 BIG_{i,t} + \varepsilon_{IND_{i,t}} + \epsilon_{i,t}\end{aligned}$$

독립변수	예상 부호	종속변수 : $\Delta DAGREE_{i,t}$		
		계수	t 값	VIF
(상수)	+/-	0.004	0.79	-
$DAD_{i,t}$	+	0.001	0.35	1.84
$\Delta LnSIZE_{i,t-1}$	-	0.013	1.59	2.35
$\Delta LEV_{i,t-1}$	+	-0.047**	-2.19	1.93
$\Delta ROA_{i,t-1}$	-	-0.038**	-2.34	2.15
$\Delta GROW_{i,t}$	+	0.007	1.54	2.01
$LOSS_{i,t-1}$?	0.001	0.20	1.87
$\Delta OCF_{i,t-1}$	-	0.010	0.61	1.29
$MKT_{i,t}$?	0.001	0.38	1.61
$BIG_{i,t}$?	0.002	0.49	1.81
$\varepsilon_{IND_{i,t}}$	포함			
F 값	1.28 < 1.70			
Adj. R ²	0.092 ($R^2=0.417$)			
N	121			

주 1) 변수의 정의 : (식 3-2) 참조. 다만,

$DAD_{i,t}$: t년도 직권 지정(초도감사) 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2)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양측검증)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신외부감사법 개정·시행으로 2020년 사업연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적용됨에 따라 감사시간, 감사보수,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의 변화를 중심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국내 상장기업 중 2018년도 개별기준 총자산 1,826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동 요건에 부합한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과 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감사품질의 투입기반 요소인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변화, 산출기반 요소인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형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에 대한 지정 전후 비교,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 간 전년대비 증가 정도의 차이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에 대한 지정 전후의 분석결과,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지정 이후가 지정 이전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는 지정 이후가 지정 이전보다 예상과 달리 작게 나타나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로써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후 감사품질의 투입기반 측정요소인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산출기반 측정요소인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는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주기적 지정으로 감사인이 교체되면 감사인은 차별적인 감사결과를 얻기 위해 지정 이전보다 감사투입시간을 크게 확대하고 이로 인해 감사보수도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피감사기업 입장에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으로 인해 감사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사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도 있다. 한편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후가 지정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로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이전의 자유수임감사 기간 중 마지막 연도(2019년)에 감사인이 감사를 보수적으로 실시하여 의견불일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반사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현상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지정 전 자유수임감사인이 감사인 교체 후 나타날 수 있는 자신의 명성 훼손을 방지하고자 보수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은 교체 직전의 보수적인 감사로 인해 선제적으로 강화되고 교체 직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 간 전년대비 증가 정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는 예상대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이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의 경우 감사인 교체 직전의 감사결과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성과를 얻고자 감사투입시간을 확대할 유인이 자유수임감사보다 더 높고 감사기간도 3년간 보장되기 때문에 감사보수를 할인해 줄 유인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만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이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아울러 본 분석에 대한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당감사보수와 직권지정 기업을 이용한 추가분석에서도 본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먼저 표준감사시간제 차등 적용 관련 문제점을 감안하고자 시간당감사보수를 이용한 추가분석결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은 지정 이후가 지정 이전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 간의 전년대비 증가 정도에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이 자유수임초도감사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어 직권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 간 추가분석결과에서는 감사보수의 경우 직권 지정 기업이 자유수임감사보다 전년대비 증가 정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본 연구는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효과를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최초의 연구로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전후,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 간에 대하여 감사품질의 투입기반 요소인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산출기반 요소인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를 분석하였다. 이로써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이후 감사인의 노력인 감사시간의 변화, 감사비용인 감사보수의 변화,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정도를 파악한 최초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 감독당국, 이해 당사인 외부감사인(회계법인)과 상장기업 등이 유의 깊게 참고할만한 사항으로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의 경우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 기업임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으로 인한 감사인 교체 시 감사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피감사기업 입장에서는 제도적 변화로 인해 감사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에 따른 감사시간 증가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자유수임감사와 비교해 볼 때 지정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에 대해 상대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없어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보수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적절히 통제하거나 비용증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기적 지정으로 감사인이 교체된 이후 경영자가 공시한 잠정이익과 감사 후 실제이익과의 차이를 이용한 분석결과에서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는 예상과 달리 이전보다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일부 선 행연구에서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가 클 경우 의견구매 목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한 후 나타나는 의견불일치의 감소와는 다른 차원이다. 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으로 교체 직전 자유수임감사인이 마지막 연도의 감사를 보수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서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가 선제

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확인된 만큼 향후 동 제도의 확대 적용에 대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 공개에 대하여 감독당국(증선위)은 부정적인 반면 해당 기업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연구 과정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여부를 기업별 IR담당자와 유선 통화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해당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알려주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에도 감사인 교체 사유로 동 사실을 공지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6년간 자유수임감사를 받은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적용되므로 해당 기업은 동 사실에 대해 공개를 꺼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때 동 사항에 대한 명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상장기업의 감사인 수임형태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수임형태 구분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소수이고 동 기준에 맞는 대응표본 중심으로 분석함에 따라 연구표본이 제한적이라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과 자유수임초도감사 기업 간의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 표본과 대상 기간을 보다 확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장내철, 정래용, 도용선. (2017). 잠정실적의 수정과 감사품질.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59(4), 113–133.
- 곽수근, 박종일. (2008).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오차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47, 211–246.
- 권수영, 김문철, 정태진. (2005).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0(4), 47–76.
- 권수영, 신현걸, 정재연. (2007). 우리나라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회계저널』, 16(4), 1–25.
- 권수영, 기은선, 허진숙. (2012). 감사노력이 계속감사시간과 이익의 질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7(4), 83–120.
- 권수영, 이한상, 최종학. (2013). 감사품질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회계학연구』, 38(2), 447–523.
- 권수영, 김효은, 정경철. (2018). 감사파트너의 비정상 감사시간 및 감사시간 비중이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60(4), 341–378.
- 권수영, 기은선, 김효은. (2020). 글로벌 산업전문 감사인의 감사보수 프리미엄과 감사품질. 『회계학연구』, 46(1), 41–82.
- 금융감독원, 201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발표(보도자료, 2018.9.10).
- 금융감독원, 2021, 2020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보도자료, 2021.1.27).
- 금융감독원, 2019, 2020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보도자료, 2019.10.16).
- 금융감독원, 2012–2016, 2011–2015사업연도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분석(보도자료, 2012.8.20, 2013.9.4, 2014.9.1, 2015.8.31, 2016.9.9).

- 금융감독원, 2021,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보도자료, 2021.9.24).
- 김경률, 윤용석. (2019). 감사인 지정과 이익조정. 『동서연구』, 31(4), 135–164.
- 김경순, 박선영, 이진훤. (2020). 연결재무제표 복잡성이 감사의견 구매행태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30(3), 1–41.
- 김경용, 정균범. (2020). 외부감사법상 표준감사시간제의 적용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3, 1–38.
- 김명인, 최종학, 서민정. (2008). 감사인의 감사 및 비감사 보수와 고객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 사이의 관계. 『회계학연구』, 33(4), 175–210.
- 김용수, 전규안. (2016). 직급별 감사시간이 감사품질 및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5(4), 1339–1375.
- 김용식. (2013). K-IFRS 시행에 따른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와 감사의견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38.(2), 81–112.
- 김윤경, 문상혁. (2015). 감사인 지정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 감사보수당 감사시간을 이용하여. 『글로벌경영학회지』, 12(3), 377–400.
- 김윤진, 김용식, 홍용식. (2014). K-IFRS 자발적 도입 비상장기업의 감사보수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57(1), 271–306.
- 김재춘, 김용식. (2018). 비상장기업의 감사인 교체에 관한 실증연구 : 감사의견의 종류 및 원인별 분석. 『국제회계연구』, 84, 69–94.
- 노준화, 배길수, 전영순. (2003). 지정감사인이 더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가? 『회계학연구』, 28(4), 177–202.
- 노준화, 신유진. (2018). 감사인의 특성이 잠정이익 수정 정도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60(30), 85–122.
- 류승우, 이종천, 김웅길, 한승수. (2015). 감사시간과 내부심리시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40(4), 213–246.
- 마희영, 권수영. (2010). 비정상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가 오류발생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44, 119–155.
- 마희영, 박성종, 허광복, 이만우. (2012).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감사시간이

- 감리지적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44, 119–155.
- 문상혁, 지현미. (2006). 소송위험이 감사시간과 감사인의 보수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43, 311–336.
- 박재환, 박상연. (2011). 감사보수할인이 감사시간 및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12(2), 455–489.
- 박종성, 조은주. (2016).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감사투입시간 제공이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에 미친 영향 분석.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58(3), 173–209.
- 박종성, 곽승욱. (2018).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평균감사투입시간 제공효과 분석. 『회계와 정책연구』, 23(4), 123–149.
- 박종일, 최관. (2009). 비정상적인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재량적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10(3), 265–301.
- 배지현, 김상일, 이호영. (2009). 변경된 감사인 지정제도가 신규상장기업의 이익조정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27(3), 237–272.
- 선우희연, 이우종. (2020).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이행비용 : 피감법인의 효용변화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45(6), 111–147.
- 손성규, 이은철. (2005).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에 대한 실증분석 : 기업특성, 감사품질, 감사인 교체를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1284–1313.
- 손성규, 이영한, 신용인. (2006). 직급별 감사투입시간과 감사위험 및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44, 335–362.
- 신용준, 김은. (2010). 감사인 지정과 감사시간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내생성 검증을 중심으로. 『국제 회계연구』, 29, 177–208.
- 신현걸, 정수진. (2017).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한 평균감사투입시간이 실제 감사시간 및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 저널』, 18(2), 211–213.

- 오광욱, 문보영. (2017). 초과감사보수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인식 : 추가적 인 노력 투하 여부에 대한 차별적 해석. 『회계정보연구』, 35(3), 115-136.
- 오윤숙, 손성규, 정기위. (2013). 순이연법인세 변동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정책연구』, 18(4), 23-49.
- 윤용석. (2020). 연결재무제표 감사시간 공시와 감사품질에 대한 분석. 『한국 자료분석학회』, 22(4), 1631-1642.
- 이광숙, 기은선. (2018). 낮은 감사보수 현실화율이 감사품질의 하락을 초래하는가? 『회계정보연구』, 36(1), 59-85.
- 이동훈, 박선영, 하석태. (2019).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9(8), 552-571.
- 이명곤, 인창열, 최지환. (2019). 내/외부 감사비용과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 『회계저널』, 29(1), 93-120.
- 이민우, 정기위. (2020). 감사환경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과 감사품질 개선효과. 『회계저널』, 29(3), 27-71.
- 이상철, 박재완, 정갑수. (2010). 초도감사보수할인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 회계학회 학술연구논문발표회 논문집』, 1-21.
- 이세철. (2020). 감사계약 기간 동안 비정상 감사보수 변동과 감사품질 : 초도감사를 중심으로. 『회계정보연구』, 38(1), 107-129.
- 이영한, 신나리. (2018). 감사인 명성과 감사자원 투입수준이 상장이후 공모주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43(5), 35-66.
- 이영한, 정영기, 김광윤. (2019). 감사품질의 정의, 측정과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 연구.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61(4), 27-65.
- 이유선, 노기팔, 박경호. (2021).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34(2), 307-324.
- 이재은, 고성천. (2020). 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의 특성과 감사품질 및 감사시간·보수의 관련성.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62(4), 1-47.

- 이효익. (1990). 감사인 교체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11(1), 1-36.
- 임형주. (2015). 한국기업의 감사보수,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 22(6), 17-47.
- 전병욱. (2018). 감사투입시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60(4), 411-439.
- 정재욱, 김진희, 임태균. (2009). 감사특성(감사시간, 감사보수, 비감사보수)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14(3), 1-24.
- 조은정, 정주렴, 김범준. (2016). 경영자의 능력이 경영자-감사인간의 의견불일치에 미치는 영향 :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의무화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25(4), 37-65.
- 조형진, 송보미, 최종학. (2014).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수준과 감사품질 및 감사보수 사이의 관계. 『경영학연구』 43(5), 1529-1556.
- 최종학, 정희선. (2015). 감사의견 구매목적의 감사인 교체와 감사품질 하락. 『경영학연구』, 44(6), 1575-1607.
- 최주안, 박현영, 이호영. (2016). 지정감사인제도와 감사보수, 그리고 신규상장 기업의 감사품질.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8, 3366-3391.
- 최준혁, 김새로나. (2019). 감사수익성이 감사노력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61(1), 277-308.
- 한국경제신문, 2021, 국내 상장기업 1개사 평균 감사보수 추이(기사, 2021.8.4).
- 황국재, 박진모, 김기범. (2012).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가 외부감사에 미친 영향 : 감사보고시차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46, 219-240.
- 황인태, 강선민. (2005). 기업과 감사인이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 감사인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2005년 통계학회 발표논문』, 739-773.

2. 해외문헌

- Carcello, Dana R. Hermanson and Terry L. Neal. (2002). Auditor reporting behavior when Gaas lack Specificity: The Case of Sas No. 59.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2(1), 63–81.
- Craswell, A. and Francis, J. (1999). Pricing intial Audit Engagements : Test of Competing Theories. *The Accounting Review*, 74(2), 201–216.
- DeAngelo, L. E. (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December 1981), 183–199.
- DeFond, M. L. and J. Jiambalvo. (1994). Debt Covenant Effects and the Manipulation of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7, 145–176.
- DeFond, M. L. and J. Zhang. (2014). A Review of Archival Auditing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8, 275–326.
- Deis, D. R. and G. A. Giroux. (1992). Determinants of Audit Quality in the Public Section. *The Accounting Review*, 67(3), 462–479.
- Desir, Jeffrey R. Casterella, Julia Kokina. (2014). A Reexamination of Audit Fees for Initial Audit Engagements in the Post-SOX period.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33(2), 59–78.
- Dye, R. (1991). Informationally Motivated Auditor Replac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4, 347–374.
- Francis, J. (1984).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ices : A Study of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2), 133–151.
- Francis, J. and Simon. D. (1987). Test of Audit Pricing in the Small Client Segment of the U.S. Audit Market, *The Accounting Review*, 62(1), 145–157.
- Francis, J. and E. Willson. (1988). Auditor Changes : A Joint Test of

- Theories Relation to Agency Costs and Auditor Differentiation.
The Accounting Review, 63(October), 663–682.
- Simon, D. and Francis, J. (1988). The Effects of Auditor Change on Audit Fees: Tests of Price Cutting and Price Recovery. *The Accounting Review*, 63(2), 225–269.
- Walker and Jeffrey R. Casterella. (2000). The role of Auditee Profitability in Pricing new Audit Engagements.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9(1), 157–167.



ABSTRACT

The Effect of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on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
Focused on Audit Hours, Audit Fees, and
Disagreement between Managers and Auditors

So, Chang-Soo

Major in Accounting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With the enforcement of New External Audit Act at the end of 2017,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was introduced and has been applied to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since the 2020 business year.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audit hours, audit fees, and the disagreement between managers and auditors(the difference between provisional profit and actual profit) in companies with designated auditor and companies with self-appointed auditor in the 2020 business year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on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First, the analysis of before and after designation of auditors in

companies with designated auditor founded that audit hours and audit fees were greater in the year after the auditors were designated(2020) than in the year just before(2019). This difference can be seen that auditors who have been replaced by designation invest a lot of audit hours to show distinguished achievements on the audit results, resulting in a significant increase in audit fees. On the other hand, the disagreement between managers and auditors was smaller in the year after the auditor was designated(2020) than in the year just before(2019). This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results, and it confirmed that company-appointed auditors conducted the last year's audit(2019) conservatively just before being replaced, resulting in a temporary increase in the disagreement between managers and auditors. This phenomenon can be interpreted through conducted a conservative audit in order to prevent damage to their reputation that may occur after company-appointed auditors were replaced by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have been preemptively strengthened just before they were replaced by designated auditors.

Next, as of 2020,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egree of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between companies with designated auditor and companies with self-appointed auditor, audit hours and audit fees were greater in companies with designated auditor than companies with self-appointed auditor. This increase is interpreted as designated auditors having stronger incentives to expand audit input hours to achieve distinguishable audit results than company-appointed auditors, and there is no reason to discount audit fees since the audit period is guaranteed for three year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companies with designated auditor and companies with self-selected auditor in the degree of disagreement between managers and audito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attempt to analyze changes in major audit activitie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Therefor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is as follows.

First, although companies with designated auditor are ordinary companies with no accounting problems, their audit costs increase significantly as designated auditors were replaced, so supplementary measures are needed. Second,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following the designation of auditors was preemptively strengthened just before the replacement, proving the validity of expanding the designation of auditors. Third, the supervisory authorities hold a negative stance about disclosing the list of companies with designated auditor while companies with IR managers hold a positive stance, so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method of external auditor appointment in the disclosure list in order to resolve information asymmetry among stakeholders.

On the other hand, since this study analyzes companies when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was first applied, it is still too early to generalize the analysis results, so it is necessary to conduct further in-depth research by expanding the sample and period in the future.

[Keyword]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Audit hours, Audit fees, Disagreement between managers and auditors, Independence of auditors